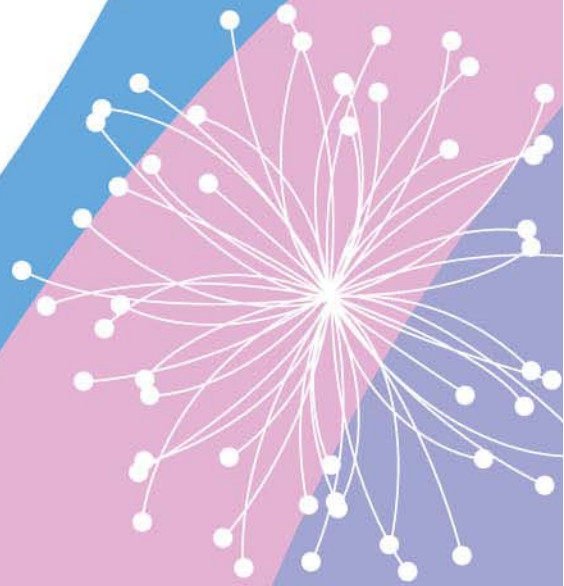



청소년 미혼모 학습권 보장 공개토론회

일시 | 2010. 3. 16. (화) 14:00 ~ 18:00

장소 | 국회 의원회관 제3간담회실(128호)



주최 |  국가인권위원회 국회여성위원회 국회교육과학기술위원회

인사말씀

안녕하십니까?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 현병철입니다.



먼저 바쁘신 가운데 오늘 토론회에 참석해 주신 여러분들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우리 위원회와 함께 오늘 이 자리를 공동으로 마련해주신 국회 여성위원회 신낙균 위원장님,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이종걸 위원장님과 소속 위원님들에게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위원회가 청소년 미혼모의 학습권에 대해 관심을 갖게 된 것은 지난해 접수된 진정사건이 계기가 되었습니다. 여고 3학년에 재학 중인 딸을 둔 부모가 불가피하게 임신한 딸이 학교의 강요에 의해 자퇴한 뒤 위원회에 구제를 요청한 사건이었습니다. 위원회는 이 사건에 대해 진정인과 학교 측이 모두 받아들일 수 있는 방안을 찾도록 노력했고, 진정을 제기한 미혼모는 현재 대학에 재학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회는 이 사건을 계기로 청소년 미혼모 문제에 대한 보다 근본적인 해법을 찾는 고민이 필요하다는 판단을 했습니다. 여러분들께서도 아시다시피 현재 우리사회는 성 개방화 흐름 속에서 청소년기에 성을 경험하는 청소년 수가 증가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처음 성을 경험하는 나이도 낮아지고 있는 추세입니다. 청소년 미혼모는 이 같은 사회변화를 반영한 것이라는 점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 위원회가 확인한 자료에 따르면 청소년 미혼모가 해마다 5천-6천명에 이르고, 매년 증가추세라는 사실을 접하고 더욱 절박한 심정으로 이 문제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더욱 심각한 것은 이들 중 상당수가 이미 학교를 떠났거나, 학교 교칙에 어긋나는 행위라는 이유로 학교 밖으로 내몰리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청소년 미혼모를 무조건 두둔하자는 것이 아닙니다. 학생의 본분은 학업과 미래를 위한 준비에 열중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청소년 미혼모 가운데 상당수가 제대로 가족의 돌봄을 받지 못한 상황에서 미혼모가 되는 현실을 감안할 때 이들에게만 책임을 묻는다고 해결될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더욱이 이런 이유로 공부를 중단하면 제대로 된 직업을 갖기 어려워 청소년 미혼모 당사자는 물론 그 자녀까지 빈곤의 굴레에 빠지는 악순환을 피할 수 없게 됩니다. 아동의 능력을 계발하여 사회의 유능한 성원이 될 수 있는 동등한 기회를 제공할 것을 밝힌 「유엔아동권리선언」을 떠올리지 않더라도 학습권은 아동의 성장, 발달, 인격완성을 위한 핵심적 기본권입니다. 그간 징계나 은폐의 대상으로 여겨져 왔던 청소년 미혼모에게도 교육받을 권리는 예외가 될 수 없을 것입니다.

미국, 영국 등에서 청소년 미혼모에 대한 적극적인 교육, 자립 지원책을 마련하고 있는 것도, 오히려 자립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해주는 것이 결국 사회적 복지비용을 줄이는 데 효과적이라는 것을 경험적으로 깨달았기 때문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는 학부모, 학교관계자, 미혼모시설 관계자, 청소년 미혼모 당사자와 전문가 등이 다양하게 모였습니다. 모쪼록 청소년 미혼모가 처한 현실을 공감하고 해결책을 모색하기 위해 지혜를 모으는 자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다시 한번 이 자리를 빌어 토론회 공동주최에 응해주신 국회 여성위원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에 감사드리며, 이후로도 위원회가 추진할 정책대안 마련에 적극적으로 힘을 실어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10년 3월 16일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 **현 병 철**

인 사 말 씀

국가인권위원회가 청소년 미혼모 학습권 보장과 관련해 오늘 국회에서 국회여성위원회, 국회교육과학기술위원회와 함께 공개토론회를 갖게 된 데 대해 늦은 감은 있지만 참으로 다행스럽고 의미 있는 자리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헌법에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무엇보다 국가는 모든 국민의 행복추구권을 충분히 보장해왔는지 심각하게 되돌아볼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감당할 수 없는 출산·양육환경은 그대로 놓아둔 채 여성들에게 출산을 강요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또한 미혼모에 대한 뿌리 깊은 편견은 생모로 하여금 양육을 포기하게 만들거나, 장애를 갖고 태어난 아이는 외국으로 입양갈 수밖에 없는 비인간적인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게다가 모든 국민은 교육을 받을 권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사회에서는 미혼모가 되는 순간 학습권을 박탈당하게 됩니다. 우리는 이러한 비교육적인 관행에 주목해야 한다고 봅니다. 학교현장은 우리 청소년 모두에게 가장 열려있는 공간으로 변화와 발전의 기회를 제공해야 합니다. 그럼에도 지금까지 대부분의 학교는 청소년 미혼모에게 도움의 손길을 내밀기느커녕 사회적 편견을 빌미로 학업을 중단하게 했던 것에 대한 반성이 필요합니다.

학교는 우선적으로 청소년들에게 바른 인성과 건전한 성지식을 갖도록 교육해야 합니다. 그럼에도 청소년들이 일탈과 한 순간의 실수를 할 경우 기관에서 교육적으로 포용하고 대처하지 못한다면 우리 청소년들의 미래는 어두울 수밖에 없습니다. 어떠한 경우에도 청소년들을 교육기관에서 밖으로 밀어내는 행위는 없어야 합니다.

오늘 토론회를 통해 청소년 미혼모들이 사회적 낙인으로 인해 학업을 중단하지 않고
꾸뚝이 자신들의 행복한 미래를 설계할 수 있도록 국가와 정부가 나서서 지원할 수 있
기를 기대해봅니다.

다시 한번 오늘 청소년 미혼모 학습권 보장을 위한 공개토론회를 준비하시느라 애쓰
신 국가인권위원회 현병철 위원장님과 임직원 여러분들의 노고를 치하 드리며, 발제자
와 토론자분들에게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0년 3월 16일

국회 여성위원회 위원장 신 낙 균

인 사 말 씀

안녕하십니까? 먼저 국가인권위원회가 “청소년 미혼모 학습권”이라는 중요한 주제에 대해 이렇게 공론의 장을 마련한 데 대해 축하와 함께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또한 이 뜻 깊은 행사에 바쁘신 와중에도 참석해주신 여러분들께도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OECD 국가 중 혼외 출생아 비율이 가장 낮은 정도로 결혼제도가 중요한 한국 사회에서 미혼모는 편견의 대상이고, 더욱이 청소년 미혼모의 경우에는 ‘비행청소년’과 동일시되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최근 저출산 현상과 관련하여 미혼모 문제는 새로운 조명을 받고 있으나 최근 논의에서도 청소년 미혼모를 포함한 미혼모 당사자들을 중심에 두고 이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방안에 대한 논의가 부족하다는 점은 여전히 아쉬움으로 남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국가인권위원회가 청소년 미혼모 문제의 핵심일 수 있는 학습권을 보장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한 이번 토론회는 참으로 시의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청소년 미혼모가 계속해서 학업을 유지한다는 것은 말처럼 쉬운 일은 아닐 것입니다. 다른 학생들, 학부모, 지도하는 교사 등 다양한 교육주체들이 각기 다른 입장을 갖고 있을 뿐만 아니라 필요한 편의시설 등 선행돼야 할 과제들이 산적해 있습니다.

오늘의 공개토론회는 그러한 문제 해결을 위한 시발점으로서, 여러분께서 내놓으시는 하나하나의 의견과 따뜻한 관심이 우리나라 청소년 미혼모 학습권 해결에 실마리를 찾는 토론회가 되길 기원합니다. 또한 우리나라 미래의 주역인 청소년들이 좀더 따뜻한 세상에서 차별받지 않고 살아갈 수 있도록 어른들이 힘과 의지를 모아주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이번 행사의 준비와 진행을 위하여 수고를 아끼지 않으신 관계자 여러분에게도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이 자리에 참석해주신 여러분의 앞길에도 건강과 건승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2010년 3월 16일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위원장 이 종 결



❖ 토론회 일정 ❖

- 일 시 : 2010. 3. 16.(화) 14:00 ~ 18:00
- 주 최 : 국가인권위원회, 국회여성위원회, 국회교육과학기술위원회
- 장 소 : 국회 의원회관 제3간담회실(128호)
- 진행순서

시간	내용	비고
14:00 ~14:3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개회 인사말씀 	현병철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 신낙균 국회여성위원회 위원장 이종걸 국회교육과학기술위원회 위원장 강지원 변호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회 및 참석자 소개 	문경란 국가인권위원회 상임위원
~14:40	발제	1. 재학 중 임신과 자퇴 강요 : 인권위 권고 사례 김은미 국가인권위원회 차별조사과장
~14:55		2. 한국 사회 십대 성의 실태 서정애 인구보건복지협회 조사연구실장
~15:10		3. 10대 엄마들의 학습에 대한 욕구 한상순 애란원 원장
~15:30		4. 청소년 미혼모 교육권 보장 실태 및 지원방안 홍순혜 서울여자대학교 사회복지학 전공 교수
~15:40		1. 청소년 입장에서 본 청소년 미혼모 학습권 청소년 미혼모 당사자
~15:50		2. 청소년 미혼모 학습권과 학교현장 강보선 용인 동백고등학교 교사
~16:00	토론	3. 생활지도와 청소년 미혼모 학습권 오병서 인천광역시교육청 중등교육과장
~16:10		4. 청소년 미혼모 학습권과 학부모간 갈등 박흥나미 인간교육실현학부모연대 학부모지원센터장
~16:20		5. 청소년 미혼모는 학교가 알기 전에 떠난다 박부희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상담실장
~16:30		6. 우리나라의 청소년 미혼모 학습 지원방안 안명수 교육과학기술부 학교운영지원과장
~16:45		휴 식
~18:00		종합 토론

목 차


발 제

1. 재학 중 임신과 자퇴 강요 : 인권위 권고 사례	1
김은미 (국가인권위원회 차별조사과장)	
2. 한국 사회 십대 성의 실태	29
서정애 (인구보건복지협회 조사연구실장)	
3. 10대 엄마들의 학습에 대한 욕구	41
한상순 (애란원 원장)	
4. 청소년 미혼모 교육권 보장 실태 및 지원방안	51
홍순혜 (서울여자대학교 사회복지학 전공 교수)	

토 론

1. 청소년 입장에서 본 청소년 미혼모 학습권	67
청소년 미혼모 당사자	
2. 청소년 미혼모 학습권과 학교 현장	73
강보선 (용인 동백고등학교 교사)	
3. 생활지도와 청소년 미혼모 학습권	79
오병서 (인천광역시교육청 중등교육과장)	
4. 청소년 미혼모 학습권과 학부모간 갈등	별지
박흥나미 (인간교육실현 학부모연대 학부모지원센터장)	
5. 청소년 미혼모는 학교가 알기 전에 떠난다	87
박부희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상담실장)	
6. 학생 미혼모 학습 지원 방안	95
안명수 (교육과학기술부 학교운영지원과장)	

발 제 1



재학중 임신과 자퇴 강요 :
인권위 권고 사례

김 은 미
국가인권위원회 차별조사과장

1. 들어가며

작년 6월 4일 국가인권위원회는 청소년 인권을 주제로 제작한 인권영화 <시선 1318> 시사회를 가졌다. 움니버스 형식의 이 영화에 담겨있는 5편의 단편 가운데 “릴레이”는 청소년 미혼모가 소재였는데, 주인공들이 “누구의 아기인지가 중요한가요? 우리끼리 잘 키울 수 있어요”라고 외친다. 입시준비에 한창인 여고생들이 같은 반 친구의 아기를 돌보는 이런 상황은 영화적 상상에서만 가능한 일인가?

만약 장학금을 받을 정도로 성실하게 학교생활을 하던 고등학교 여학생이 사귀던 사람과의 사이에서 임신을 하게 되었다면, 병원에서 들은 태아의 심장소리를 기억하며 다탈 때 대신 출산을하기로 선택했다면, 이 고3 여학생은 학교를 계속 다닌 후 친구들과 같이 졸업할 수 있을까?

이제 그 답은 ‘그렇다’이기도 하고 ‘아니다’이기도 하다. 국가인권위원회가 2009년 7월 6일 임신을 했다는 이유로 자퇴를 강요당한 진정사건과 관련하여 학교와 교육청 측에 학생을 재입학시켜 학업을 계속할 수 있게 하라고 권고했고, 그 학생은 학교원적을 회복한 후 대학입 시도 치르고 졸업도 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어머니를 비롯한 가족의 지지가 있고, 인권위 진정을 통해 구제를 받는 이런 상황이 대다수 청소년 미혼모들에게는 아직까지 현실이 아니다.

2. 진정 접수와 조사의 과정

1) 진정사건의 개요

2009년 4월 28일 한 어머니가 인권위 상담센터를 찾았다. 그 어머니가 호소한 진정 내용은 이렇다.

딸이 고등학교 3학년 재학 중 임신을 하게 되었다. 양가에서 모두 교제를 허락한 상태였고 딸이 고등학교를 졸업하는 대로 결혼을 할 예정인데, 딸의 임신사실을

알게 된 학교 측에서 “임신한 상태로 학교에 등교하는 것을 허용할 수는 없다”며 “휴학할지 자퇴할지 빨리 결정하라. 교장 선생님이 아시면 당장 퇴학이다”라며 의사결정을 독촉하였다. 또한 딸의 남자친구를 형사고발 할 수도 있다는 말을 해 자퇴서를 쓸 수밖에 없었다. 처음에는 휴학계를 냈다가 휴학하면 검정고시를 볼 수 없다는 말을 듣고 검정고시라도 응시하여 제 때에 졸업하기 위해 자퇴서를 제출했다. 이는 임신을 이유로 한 차별이므로 다시 학업을 계속할 수 있도록 도와주기 바란다.

2) 조사과정과 문제해결을 위한 특별한 노력

이 진정은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 제4호 규정에 따르면 임신을 이유로 한 교육시설 이용에서의 차별 사건인데, 청소년이 재학 중 임신으로 인해 다니던 학교를 계속 다닐 수 없게 되었다는 진정이 국가인권위원회에 처음 접수된 것은 아니다. 2008년 5월, 고등학교 2학년 학생의 임신사실을 알게 된 담임교사가 자퇴를 권하는데 다른 학교로 전학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진정이 접수된 적이 있다. 이 진정사건의 경우 조사과정에서 학생이 출산 이후 방송통신고등학교로 전학을 갈 수 있게 되어 종결되었다. 해당 교육청과 학교에서 이 정도의 협조를 하는 것은 어렵지 않았던 것이다. 그러나 그로부터 약 1년 후 접수된 또 다른 청소년미혼모 진정사건에서는 대학입시를 준비하는 고등학교 3학년 학생이 공부를 계속하고 싶고 친구들과 함께 찍은 졸업앨범을 갖고 싶다는, 소박하지만 간절한 소망을 밝힌 것이다.

결석일수가 총 수업일수의 3분의 1을 초과하면 「초중등교육법시행령」에 따라 유급이 되고, 대입 수능을 위한 내신성적 산출을 위해서 기말고시는 반드시 봐야 하는 상황에서 할 수 있는 한 신속하게 위원회 결정이 나와야 했다. 해당 학교와 교육청에 자료제출을 요구하여 받아내고 학교에 직접 찾아가 실지조사를 벌인 끝에 차별시정위원회를 거쳐 전원위원회에 안건을 상정한 때가 6월 8일, 전원위원회에서는 임신을 했다는 이유로 자퇴를 강요당한 사실이 인정되고 시정을 위한 권고가 필요하다는 의견에 일치할 보았으나 학교가 위원회의 권고를 받아들일 수 있도록 사전 설득이 필요하다는 점 또한 확인했다. 조사과정에서 완강한 학교의 입장은 바뀌지 않았고, 위원회의 권고가 실제로 이행되지 않고 원칙을 선언하는 데 그치면 당사자 학생의 실질적인 구제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판단에서다.

학업에 전념해야 하는 학생의 본분을 벗어나서 “불미스러운 행동 및 풍기문란 행동”을 한 것이고 자퇴 처리된 당해년에 복교시킬 수 없다는 학교 관계자들을 설득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었다. 이 때 같이 학교를 설득해보자고 나서준 감사한 분들이 있다. 검사 시절부터 청소년문제에 대한 각별한 관심으로 대안을 찾아냈고 청소년보호위원장까지 지낸 강지원 변호사, 20여 년간 미혼모지원시설 애란원을 운영하면서 많은 10대 미혼모를 만나고 돌보는 일을 해온 한상순 원장 등이 그 분들이다.

6월 19일 직접 학교를 방문하여 교장, 교감, 3학년 부장, 담임교사 등과 함께 간담회를 가졌다. 이 자리에서 청소년 미혼모 관련 전반적인 실태, 청소년 미혼모의 학습권이 중요한 이유, 재학 중 임신한 학생이 학업을 계속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대안들, 다른 학생들에게 미칠 부정적 영향에 대한 오해와 대책 등 많은 이야기를 나누었다. 학교는 재입학 절차를 밟을 수 있는 명분이 있고, 다른 학생들에게 미칠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으며 다른 학부모들을 설득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데까지 동의했고, 해당 교육청에서도 나서주길 바란다는 입장이 되었다.

그로부터 며칠 후 같은 학년 친구들과 같은 졸업앨범을 가질 수 있고, 졸업식에 참석할 수 있다면 위탁교육도 받아들이겠다는 당사자 학생과 어머니의 입장을 확인한 후 학교 측에 전달하고 재입학 절차를 진행해줄 것을 요청하였다. 그러나 7월 1일 학교 측은 교직원, 학교운영위원회, 학부모회 임원들이 무기명 비밀투표로 의견을 수렴한 결과 당사자 학생의 학적회복을 절대 다수가 반대하였고, 이미 자퇴 처리된 사안을 반복할 경우 학생생활지도 등에 어려움이 크다는 이유로 재입학 불가 입장을 알려왔다.

3. 권고의 내용과 판단의 근거

1) 해당 학교와 교육청에 대한 권고

2009년 7월 6일 진정이 접수된 지 두달여만에 제13차 전원위원회에서 시정권고 결정이 내려졌다. 피진정인인 학교장에게는 당사자 학생을 재입학시켜 학업을 계속할 수 있도록 할 것을 권고하였고, 해당 교육청 교육감에게는 피진정인에 대해 경고 조치할 것과

재학 중 임신한 학생이 학업을 계속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여 시행할 것을 권고하였다.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 이후 학교는 당사자 학생을 7월 13일 자로 재입학 시켰다. 또한 어떤 이유론든 학생을 학교 밖으로 내모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것에 공감하면서 다양한 대안을 찾기 위해 노력했던 해당 교육청은 피진정인에 대해 경고조치하고 타 시도교육청과 공동으로 임신한 학생의 학업 지속 방안을 마련하도록 노력하되 우선은 관내 교장회의, 생활지도 관련 교사회의 등에서 임신한 여학생의 학습권이 보장되도록 계도하겠다는 입장을 밝혀왔다.

2) 사건 판단의 몇 가지 기준과 근거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은¹⁾ 제2조 1에서 “아동이나 그 부모, 후견인의 인종, 피부색, 성별, 언어, 종교, 정치적 의견, 민족적·인종적·사회적 출신, 재산, 장애여부, 태생, 신분 등의 차별 없이 이 협약에 규정된 권리를 존중하고, 모든 아동에게 이를 보장하여야 한다”고 규정함으로써 비차별의 원칙을 강조하고 있다. 특히 같은 협약 제28조 제1항은 아동의 교육에 대한 권리를 규정하면서 (e)호에서 청소년을 포함한 아동이 학교 교육을 중단하는 상황을 예방하기 위해 교육 당국은 “학교에의 정기적 출석과 탈락률 감소를 장려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라고 명시하고 있다. 또한 「여성에 대한 모든 형태의 차별 철폐에 관한 협약」²⁾ 제10조 (f)호는 여학생의 중퇴율을 감소시키고, 일찍이 학업을 포기한 소녀 및 여성을 위한 교과과정을 마련하는 것이 남녀평등의 위한 중요한 기초가 됨을 확인하고 있다. 청소년 미혼모는 학교 밖으로 내몰리지만 청소년 미혼부가 그런 불이익을 받는 경우가 없다는 점에서 임신한 여학생에 대한 불이익은 더욱 문제가 된다.

또한 우리 「헌법」 제31조는 “모든 국민은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교육기본법」 제3조에서는 “모든 국민은 평생에 걸쳐 학습하고, 능력과 적성에 따라 교육받을 권리를 가진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4조

1)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 제1조는 “이 협약의 목적상, ‘아동’이라 함은 아동에게 적용되는 법에 의하여 보다 조기에 성인 연령에 달하지 아니하는 한 만 18세 미만의 모든 사람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1990년에 발효되어 유엔 인권조약 가운데 가장 많은 당사국을 갖고 있는 이 협약에 한국은 1991년에 가입·비준하였으므로 당사국으로서의 의무와 책임이 있다.

2) 이 협약은 1981년에 발효되었는데 한국은 1985년부터 당사국이다.

에서 “모든 국민은 성별, 종교, 신념, 인종, 사회적 신분, 경제적 지위 또는 신체적 조건 등을 이유로 교육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초·중등교육법」 제18조의4에 따르면 학교의 설립자·경영자와 학교의 장은 「헌법」과 국제인권조약에 명시된 학생의 인권을 보장하여야 한다.

이상과 같은 국제인권조약, 우리 헌법, 교육관련 법 등의 규정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학습권은 청소년을 비롯한 아동의 성장과 발달, 인격완성을 위해 꼭 필요한 학습을 할 고유의 권리로서 인권의 기본이자 핵심이다. 또한 임신으로 인해 학업을 중단할 경우 일생을 통해 실업상태나 잠재적인 실업에 놓일 가능성이 높아 장기적인 빈곤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 학업중단으로 인해 교육연한이 낮아지면 한국처럼 학력제한이 많은 사회에서는 질 좋은 일자리를 구할 수 없는 가운데 빈곤한 생활을 하게 될 확률이 아주 높고 이는 아동빈곤으로 이어지는 악순환의 굴레에 들어서게 되는 것이다. 때문에 청소년 미혼모의 자립성을 높이고 미래를 위한 기회를 열어주기 위해서라도 교육받을 권리는 적극적으로 보장해야 한다. 청소년 임신이 권장할 일은 아니지만 임신이 청소년 학생에게서 교육받을 권리와 건강한 시민이 될 수 있는 기회를 박탈하는 충분한 이유가 될 수는 없는 것이다.

한편 학교 측에서는 다른 학생들의 학습권도 중요하다고 주장했으나 임신한 학생과 함께 학교에 다니는 것이 어떻게 다른 학생들의 학습권을 침해하게 되는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근거를 제시하지는 못했다. 미혼모에 대한 사회적 낙인과 부정적 시각이 존재하는 현실에서 학생의 임신사실이 다른 학생에게 알려질 경우, 학교 당국이나 교사의 생활지도에 어려움이 예상되고 자칫 청소년 임신을 부추기는 것으로 오해될 소지가 있다는 우려가 일리가 있지만 다른 학생들에게 좋지 않은 영향을 주고 학습에 방해가 될 것이라는 막연한 우려 때문에 임신한 학생에게 전학, 휴학, 자퇴를 종용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보았다. 또한 학교 측에서는 당사자 학생의 임신이 ‘불미스럽고 학교의 명예를 훼손한 행동’이라 주장했지만 양가부모의 허락을 받아 남자친구와 교제를 하고 결혼을 약속한 상태에서 임신했고 이러한 이성교제와 임신으로 학교의 수업에 물의를 일으키거나 사회적인 문제를 야기한 사실도 없다. 이러한 상황에서 이성교제 및 임신이 학교생활규정 상 징계사유로 규정되어 있는 ‘불미스런 행동’ 또는 ‘불건전한 이성교제’에 해당되어 퇴학에 이르게 될지는 속단할 수 없고 설령 당사자 학생의 행동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했다 하더라도 올바른 성교육을 통해 자율과 책임을 가르치는 것이 학교 본연의 역할과 책임이라는 것이 위원회 판단의 근거였다.

4. 위원회 결정의 의미와 과제

오늘날 청소년들을 둘러싼 사회문화적 환경을 살펴보면 각종 매체를 통해 성적 표현과 내용을 쉽게 접할 수 있다. 이런 가운데 성경험 청소년 수가 증가하면서 그 연령도 점점 낮아지고 있다. 이와 같은 사회적 배경 속에서 청소년 미혼모의 수도 증가추세에 있고 아기를 낳아 직접 양육하는 10대 미혼모의 수도 늘어나고 있는데, 2007년 국가인권위원회가 의뢰한 ‘청소년 미혼모의 교육권 보장’ 실태조사 결과도 이를 여실히 뒷받침하고 있다. 국가인권위원회에 재학 중 임신했다는 이유로 자퇴를 강요하는 것은 차별이라는 진정이 제기된 것을 보고 놀라거나 걱정하는 사람들이 있을지 모르겠으나 사실은 그간 불편해서 외면하고 싶었던 현실이 모습을 드러내고 더 이상 쉬쉬 하면서 없어야 하는 일처럼 취급하지 말라고 이야기 한 것이다. 또한 편견과 낙인에 가두어 낙오자로 만들지 말고, 공부할 수 있는 방법과 자립의 기초를 만들어달라고 호소한 것이다.

임신한 청소년을 문제아로 규정하고 교육받을 권리를 박탈한다면 결과적으로 청소년 임신이 줄어들기보다 건강을 위협하는 불법 낙태로 이어지기 쉽다. 청소년 낙태는 정확한 숫자조차 제대로 파악되고 있지 않지만 증가 추세라는 것에 별 이견이 없는 것 또한 우리의 현실인데, 미국이나 스웨덴 등 서구의 여러 나라를 비롯하여 동양문화권인 대만에서조차 늘어나는 청소년 미혼모의 학습권을 보장하고 출산예정 학생에게 출산휴가제 등을 도입하는 등 여러 가지 노력을 기울이는 것을 참고하지 않을 수 없는 이유이기도 하다.

이 진정사건에 대한 위원회의 결정은 개별 사례에 대한 것이었다. 그러나 개별 사안의 구제에 그칠 일이 아니라 청소년 미혼모의 학습권을 더욱 적극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정책이 필요하다는 것을 절감하고 정책 권고를 추진하기로 결정하였다. 위원회가 재학 중에 임신했다는 이유로 학업중단 상황에 내몰려서는 안 된다는 것을 확인하고 공부를 계

속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라는 권고결정을 했지만 이를 뒷받침하는 정책 도입까지 가
자면 많은 과제들이 자리하고 있다. 우선은 청소년 미혼모에 대한 사회적 낙인을 거두고
어떻게든 해법을 찾자는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고, 어떻게 어떤 방법으로 학습권을 보장
하는 것이 청소년 미혼모 당사자들을 비롯한 관계 당사자들에게 실효성이 있는지 구체
적이고 다양한 방안을 찾는 노력도 있어야 한다. 오늘 이 토론회 자리가 합의의 기초를
만들고 대안을 고민하는 직접적인 계기가 되길 소망한다.

<붙임> 관련 사건(09진차535)에 대한 국가인권위원회 결정문

국 가 인 권 위 원 회 결 정

사 건 09진차535 임신을 이유로 한 교육시설 이용 차별

진 정 인 ○○○

피 해 자 ○○○

피진정인 ○○여자고등학교장

주 문

1. 피진정인에게 피해자를 재입학시켜 학업을 계속할 수 있도록 할 것을 권고한다.
2. ○○광역시교육감에게 피진정인에 대해 경고 조치할 것과 재학 중 임신한 학생이 학업을 계속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여 시행할 것을 권고한다.

이 유

1. 진정의 요지

진정인의 딸인 피해자는 ○○여자고등학교 3학년에 재학 중 임신을 하게 되었는데 태아의 아버지(이하 ‘피해자의 남자친구’라 한다)와 피해자는 양가에서 모두 교제를 허락한 상태였고 피해자가 고등학교를 졸업하는 대로 결혼을 할 예정이다. 그런데 피진정인 측은 피해자의 임신사실을 알게 된 이후, 피해자에게 “임신한 상태로 학교에 등교하는 것을 허용할 수는 없다”며 “휴학할지 자퇴할지 빨리 결정하라. 교장 선생님이 아시면 당장 퇴학이다”라며 의사결정을 독촉하였다. 또한 피해자의 남자친구를 형사고발 할 수도 있다는 말을 해 자퇴서를 쓸 수밖에 없었다. 처음에는 휴학계를 냈다가 휴학하면 검정고시를 볼 수 없다는 말을 듣고 검정고시라도 응시하여 제때에 졸업하기 위해 자퇴서를 제출했다. 이는 임신을 이유로 한 차별이므로 시정해 주기 바라며 다시 학업을 계속할 수 있도록 도와주기 바란다.

2. 당사자의 주장

가. 진정한

진정요지와 같다.

나. 피진정인

1) 피해자 남자친구에 대한 형사고발을 언급하며 협박한 사실이 없다.

2) 피해자는 학교를 계속 다닐 수 있게 해달라고 요청하였으나 다른 학생들의 학습권도 보호하여야 하기에 최선의 방법은 휴학이라고 판단하여 휴학을 권유하였다. 부모 및 학생이 합의해 자퇴서를 제출했으므로 올해는 복교가 불가능하다. 내년에 학생이 원할 경우 재·전·입학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복학이 가능하다.

3) 학생의 본분은 학업에 전념해야 하는 것이므로 부모님의 교제 허락 유무와 관계없이 학생이 임신을 하였다는 사실만으로도 “불미스러운 행동” 및 “풍기 문란 행동”으로 판단된다.

4) 피해자와 태아의 건강을 위해서도 학교를 계속 다니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3. 관련 규정

[별지 1] 기재와 같다.

4. 인정사실

가. 피해자는 양가부모의 허락을 받은 상태에서 남자친구와 교제를 하였고 결혼을 약속한 상태에서 임신을 하게 되었다. 피해자가 임신한 사실이 학교에 알려진 후 2009. 4. 14. 진정한 측(진정인, 피해자의 오빠, 피해자의 남자친구, 남자친구의 어머니)과 피진정인 측(피해자의 담임교사, 3학년 부장교사)은 ○○여자고등학교 진로상담실에서 피해자의 향후 진로문제를 두고 면담을 하였다.

나. 위 면담자리에서 피진정인 측은 임신한 상태에서 학교에 다니는 것은 어렵다는 입장을 밝히며 진정인 측에게 피해자가 방송통신고등학교로 전학 또는 휴학하는 방법을 제시하였다. 이 자리에서 피진정인 측은 “왜 학교에 못 다니게 하느냐, 근거규정이 무엇이냐”며 항의하는 피해자의 남자친구에게 학생을 임신시킨 행위에 대해 형사고발을 할 수도 있다고 말하며 ‘불미스런 행동으로 학교의 명예를 훼손한 학생 또는 불건전한 이성교제로 풍기를 문란하게 한 학생’에 대해서는 퇴학조치 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는 ○○여자고등학교의 생활규정을 복사해서 제시하였다.

다. 2009. 4. 15. 피해자는 휴학 의사를 표시하였으나, 이후 휴학 상태로는 검정고시에 응시할 수 없음을 알고 같은 달 20. 자퇴원을 제출하였고 피진정인은 피해자의 결석 일수를 줄여주고자 4. 17.자로 자퇴처리 하였다.

라. 2009. 4. 17. 진정인은 ○○여자고등학교로 찾아가 보건교사와 면담하는 자리에서 학교에서 형사고발을 할 수도 있다고 말하는데 정말 그렇게 할 것 같은지를 문의하였고 이에 보건교사는 “부모가 결혼시킨다는데 굳이 그렇게 하겠느냐”고 답변하였다.

마. 2009. 6. 19. 국가인권위원회는 전문가(강지원 변호사, 한상순 애란원 원장)와 함께 ○○여고를 방문해 간담회를 개최하고 청소년 임신에 대한 전반적인 실태, 청소년 미혼모의 학업 지속을 위한 대안, 피해자의 원적 회복, 그것이 다른 학생에 미칠 영향 등에 대해 논의했다. 그 결과 학생지도의 현실적 어려움을 감안하면서 피해자의 학습권을 보장할 수 있는 하나의 방편으로 피진정 학교에 재입학한 이후 대안학교에서 위탁교육을 받는 대안을 마련하고 이를 위해 피진정인과 국가인권위원회가 함께 노력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그러나 2009. 7. 1 피진정인은 “교직원 및 학교운영위원회, 학부모회 임원들을 대상으로 투표한 결과 절대다수가 반대했고 학생생활지도에 어려움이 클 것으로 예상되어 피해자의 학적을 회복시킬 수 없다”는 의견을 공식 통보하였다.

5. 판단

우선 인정사실에 의하여 피해자가 자퇴서를 제출하게 된 경위를 살펴본다. 피진정인 측은 피해자 남자친구의 행위가 형사적으로 처벌될 수 있고, 양가의 허락을 받고 결혼을

약속한 사람과의 관계에서 임신했다 하더라도 불미스런 행동 또는 불건전한 이성교제 행위에 해당되어 학교생활규정에 따라 징계될 수 있다는 취지의 발언을 하였다. 이에 따라 피해자가 심리적으로 압박을 받아 자퇴서를 제출하였음이 인정된다. 이 경우 피해자의 자퇴서 제출은 진심에서 우러난 것으로 볼 수 없으며 피진정인 측의 독촉과 중용에 못 이겨 어쩔 수 없이 제출하게 된 것으로 판단된다. 이에 관하여 피진정인은 피해자 남자친구에 대한 형사고발을 언급한 적이 없으며, 피해자 및 부모 등이 합의해 자퇴서를 제출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위 인정사실에 비추어 그 주장을 믿기 어렵다.

가. 차별행위에 해당되는지 여부

진정인은 피진정인의 이러한 행위가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 제4호가 규정하고 있는 평등권침해의 차별행위에 해당된다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이에 관하여 살펴본다.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 제4호는 합리적 이유 없이 임신 등을 이유로 교육시설 이용과 관련하여 특정한 사람을 우대·배제·구별하거나 불리하게 대우하는 행위를 평등권침해의 차별행위로 규정하고 있다. 한편 피진정인이 피해자에 대하여 위와 같이 자퇴서를 제출하도록 중용하고 이를 수리하였음은 위에서 인정한 바와 같다. 피진정인의 이러한 행위는 피해자가 임신하였음을 이유로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학업을 중단하도록 한 것이므로 임신을 이유로 하여 교육시설 이용과 관련하여 특정인을 배제·구별하거나 불리하게 대우하는 행위에 해당된다. 그러므로 피진정인의 위와 같은 행위가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 제4호가 규정하고 있는 차별행위가 되는지 여부는 피진정인의 행위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지의 여부에 달려있다. 이하에서는 이에 관하여 살펴본다.

첫째, 「교육기본법」 제3조는 「헌법」 제31조에 따라 모든 국민은 평생에 걸쳐 학습하고, 능력과 적성에 따라 교육 받을 권리를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동법 제4조는 모든 국민은 성별, 종교, 신념, 인종, 사회적 신분, 경제적 지위 또는 신체적 조건 등을 이유로 교육에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유엔아동권리협약」 제7조에도 아동은 교육받을 권리가 있고, 사회의 유능한 성원이 될 동등한 기회를 아동에게 제공해야 한다고 선언하고 있다. 「교육기본법」 및 「유엔아동권리협약」의 각 규정의 취지에서 볼 수 있듯이 학습권은 아동의 성장과 발달, 인격완성을 위해 필요한 학습을 할 고유의 권리로서 기본권적 인권 중에서도 핵심이다. 또한 임신으로 인해 학업을 중단할

경우 일생을 통해 실업상태나 잠재적인 실업에 놓일 가능성이 높아 장기적인 빈곤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 학업중단(낮은 교육수준) → 취업의 어려움 → 빈곤 → 아동빈곤의 악순환을 야기할 수 있어 이들의 자립성을 높이고 미래를 위한 기회를 열어주기 위해서라도 적극적으로 교육받을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 청소년 임신이 권장할 일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그 자체로 청소년 학생에게서 교육받을 권리와 건강한 시민이 될 수 있는 기회를 박탈할 충분한 이유 또한 될 수 없다. 따라서 임신을 했다는 이유로 학교가 휴학 또는 자퇴를 종용하고 이로 인해 학생이 자퇴를 결정했다면 이는 학생의 학습권을 침해한 것이다.

둘째, 피진정인은 다른 학생들의 학습권도 보호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임신한 학생과 함께 학교에 다니는 것이 어떻게 다른 학생들의 학습권을 침해하게 되는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논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미혼모에 대한 사회적 낙인과 부정적 시각이 존재하는 현실에서 학생의 임신사실이 다른 학생에게 알려질 경우, 학교 당국이나 교사의 생활지도에 어려움이 예상되고 자칫 청소년 임신 등을 부추기는 것으로 오해될 소지가 있다는 우려가 일리가 없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막연히 동료 학생들에게 좋지 않은 영향을 줄 것이고 학습에 방해가 될 것이라는 우려 때문에 임신한 학생에게 전학 또는 휴학을 종용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셋째, 피진정인 측은 피해자의 임신이 ‘불미스럽고 학교의 명예를 훼손한 행동’이라 주장하고 있는바 이에 대해 살펴본다. 피해자가 양가부모의 허락을 받고 남자친구와 교제를 하고 결혼을 약속한 상태에서 임신을 하였음은 위에서 본 바와 같다. 피해자는 이러한 이성교제 및 임신행위로 학교의 수업에 물의를 일으키거나 사회적인 문제를 야기한 사실이 없다. 이러한 상황에서 피해자의 이성교제 및 임신이 학교생활규정 상 징계사유로 규정되어 있는 ‘불미스런 행동’ 또는 ‘불건전한 이성교제’에 해당되어 퇴학에 이르게 될지 여부는 기성의 관념에 따라 속단할 수 없다. 설령 피진정인이 피해자의 행동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했다 하더라도 피해자에게 올바른 성교육을 통해 자율과 책임을 가르치는 것이 본연의 역할과 책임이라 할 것이고 피해자로부터 교육 받을 권리 자체를 박탈하는 행위가 정당화 될 수는 없다. 한국이 가입하고 비준한 「유엔아동권리협약」 제 28조 ‘마’항에서도 아동·청소년의 학교 교육이 중단되는 상황을 예방하기 위해 “교육 당국은 학교의 중퇴율을 감소시키기 위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학업

을 중도에 중단하는 것이 아동의 성장과 발전, 나아가 한 개인의 인생에 미치는 영향이 얼마나 큰 것인지를 다시 한번 상기할 필요가 있다.

이상과 같은 점을 종합해보면, 피진정인이 피해자에 대하여 위와 같이 자퇴서를 제출하도록 종용하고 이를 수리한 행위에는 합리적인 이유가 없다고 판단된다.

나. 차별행위에 대한 구제조치

이러한 차별행위에 대한 구제조치로서는 우선 피진정인이 피해자를 재입학시켜 학업을 계속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 청소년 미혼모에 관한 우리의 현실을 볼 때, 재학 중 임신한 학생에 대한 차별을 방지하고 그들의 학습권을 보장하기 위한 대책을 조속히 마련하는 일은 비단 피진정인에게만 국한된 일은 아니다. (구)국가청소년위원회의 국정감사 발표 자료에 따르면, 약 5,000~6,000명 정도의 청소년 미혼모가 해마다 발생하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으며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통계결과에 따르면 2008년 한 해 동안 19세 이하 청소년 출산이 3,300건에 달하였다. 한국의 출산율은 해마다 감소하고 있지만 10대의 출산율은 해마다 증가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제 청소년의 성문제는 쉬쉬하며 적당히 외면하거나 임신한 학생을 다른 학생들로부터 분리시킴으로써 해결될 상황이 아니다. 적극적으로, 제대로 성교육을 하는 것이야말로 올바른 학생생활 지도이며 피해자를 포함한 모든 학생들의 학습권을 보장하는 길이라 할 것이다. 이 진정사건처럼 임신한 학생을 문제아로 규정하고 교육받을 권리를 박탈하게 된다면 결과적으로 청소년 임신이 줄어들기 보다는 불법적인 낙태로 이어지기 쉽다. 청소년 낙태는 정확한 숫자조차 제대로 파악되고 있지 않지만 증가 추세라는 것에 이견은 없을 것이다. 형법 상 낙태는 명백한 범죄라는 점에서 임신이나 출산을 한 청소년이 안정적으로 학업에 전념하도록 지원하지 않는 것은 결국 은연중에 불법을 부추기며 문제를 은폐하는 것과 다르지 않다. 서구의 여러 국가를 비롯하여 동양문화권인 대만에서조차 늘어나는 청소년 미혼모의 학습권을 보장하고 출산예정 학생에게 출산휴가제 등을 도입하는 노력을 기울이는 것도 바로 이 같은 문제의식에서 비롯됐다 할 것이다. (별지2 참조)

위와 같은 점들을 종합하여 판단하건대, 피진정인은 위와 같은 차별행위를 당한 피해

자를 즉시 재입학시켜 학업을 계속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또한 ○○광역시교육감은 피진정인의 감독기관으로서, 합리적 이유 없이 피해자의 자퇴를 종용한 피진정인에 대하여 경고 조치를 취하고 재학 중 임신한 학생이 학업을 계속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여 시행함으로써 향후 다른 학교에서 이와 같은 차별행위 및 학습권 침해 행위가 재발하는 것을 방지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6.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국가인권위원회법」 제44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9. 7. 6.

위원장	안 경 환<불참>
위원장 직무대행	최 경 숙
위원	유 남 영
위원	문 경 란
위원	김 태 훈
위원	윤 기 원
위원	정 재 근
위원	황 덕 남
위원	조 국
위원	최 윤 희<불참>
위원	김 양 원

[별지 1]

관련 규정

1. 「**헌법**」 [헌법 제10호, 1987.10.29, 전부개정]

제10조(인간의 존엄성과 기본적 인권의 보장)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

제11조(평등권, 특수계급제도의 부인, 영전의 효력) ①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제31조(교육을 받을 권리·의무·평생교육진흥) ①모든 국민은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2. 「**교육기본법**」 [법률 제8915호, 2008. 3.21, 일부개정]

제3조 (학습권) 모든 국민은 평생에 걸쳐 학습하고, 능력과 적성에 따라 교육 받을 권리를 가진다.

제4조 (교육의 기회균등) ① 모든 국민은 성별, 종교, 신념, 인종, 사회적 신분, 경제적 지위 또는 신체적 조건 등을 이유로 교육에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3. 「**초·중등교육법**」 [법률 제8917호, 2008. 3.21, 일부개정]

제18조 (학생의 징계) ①학교의 장은 교육상 필요한 때에는 법령 및 학칙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학생을 징계하거나 기타의 방법으로 지도할 수 있다. 다만, 의무교육과정에 있는 학생을 퇴학시킬 수 없다.

②학교의 장은 학생을 징계하고자 하는 경우 해당 학생 또는 학부모에게 의견진술의 기회를 부여하는 등 적정한 절차를 거쳐야 한다.

제18조의2 (재심청구) ① 제18조제1항에 따른 징계처분 중 퇴학조치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학생 또는 그 보호자는 그 조치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 또는 그 조치가 있음을 안 날부터 10일 이내에 제18조의3에 따른 시·도학생징계조정위원회에 그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② 제18조의3에 따른 시·도학생징계조정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재심청구를 받은 때에는 30일 이내에 이를 심사·결정하여 청구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심사결정에 이의가 있는 청구인은 그 통보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른 재심청구, 제2항에 따른 심사 절차와 결정 통보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4.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1375호, 2009.3.27, 일부개정]

제9조 (학교규칙의 기재사항) ① 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학교의 학교규칙(이하 "학칙"이라 한다)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7. 학생포상 및 학생징계

제31조 (학생의 징계 등) ① 법 제18조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학교의 장은 교육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학생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1의 징계를 할 수 있다.

1. 학교내의 봉사
2. 사회봉사
3. 특별교육이수
4. 퇴학처분

② 학교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징계를 할 때에는 학생의 인격이 존중되는 교육적인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그 사유의 경중에 따라 징계의 종류를 단계별로 적용하여 학생에게 개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제45조 (수업일수) 법 제2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학교의 수업일수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따라 학교의 장이 정한다. <개정 2007.2.1>

1. 삭제 <2005.1.29>

2.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고등기술학교 및 특수학교(유치부를 제외한다) : 매학년 220일 이상. 다만, 학교의 장은 천재·지변이나 주 5일 수업의 실시, 연구학교의 운영 또는 제105조의 규정에 의한 자율학교의 운영 등 교육과정의 운영상 필요한 경우에는 10분의 1의 범위에서 수업일수를 감축할 수 있으며, 수업일수를 감축한 경우 다음 학년도 개시 30일 전에 관할청에 보고해야 한다.

제50조 (수료 및 졸업 등) ① 생략

- ② 학생의 각 학년과정의 수료에 필요한 출석일수는 제45조의 규정에 의한 수업일수의 3분의 2이상으로 한다.

5. 「유엔아동권리협약」

제2조 협약의 당사국은 아동이나 그 부모, 후견인의 인종, 피부색, 성별, 언어, 종교, 정치적 의견, 민족적·인종적·사회적 출신, 재산, 장애여부, 태생, 신분 등의 차별 없이 이 협약에 규정된 권리를 존중하고, 모든 아동에게 이를 보장하여야 한다.
당사국은 아동이 부모나 후견인 또는 다른 가족의 신분과 행동, 의견이나 신념을 이유로 차별이나 처벌을 받지 않도록 모든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제28조 당사국은 교육에 대한 아동의 권리를 인정하며, 균등한 기회 제공을 기반으로 이 권리를 점진적으로 달성하기 위해 특별히 다음 조치를 취해야 한다.

- 다. 모든 사람에게 능력에 따라 고등교육 기회가 개방되도록 모든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마. 학교 출석률과 중퇴율 감소를 촉진하는 조치를 취해야 한다.

6. 「유엔아동권리선언」

제7조 아동은 교육받을 권리를 가지며, 이 때의 교육은 적어도 초등교육 단계에서 무상 의무교육이어야 한다. 교육은 아동의 문화를 고양시킬 수 있는 것이어야 하고, 아동 자신의 능력과 자율적 판단과 도덕적·사회적 책임을 계발하여 사회의 유능한 성원이 될 수 있는 동등한 기회를 아동에게 제공하는 것이어야 한다.
아동 최선의 이익은 아동을 교육하고 계도할 책임이 있는 사람들의 기본 원칙이 되

어야 한다. 이러한 책임은 일차적으로 아동의 부모에게 있다.
아동은 교육이 지향하는 바와 동일한 목적으로 놀이와 여가를 누릴 기회를 가진다.
사회와 당국은 아동이 이러한 권리를 적극 향유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별지 2]

청소년 미혼모 학습권 보장 외국 사례

□ 청소년 미혼모 교육권 관련 외국 사례³⁾

외국의 청소년 미혼모 교육권 보장 관련 사례 (요약)

국가	학업지속을 위한 프로그램 / 관련 법령	프로그램 내용
미국	TAPP (Teenage Parenting Program) LEAP (Learning, Earning & Parenting) 『교육법안』	- 학교 내 10대 미혼모 특별학급, 탁아시설 운영, 학업과 양육준비, 아동보호 서비스 - 학교·검정고시 준비 10대 미혼모에게 재정적 인센티브 - 학교 출석시 아동보호와 차량이동 지원 등
영국	『20 Sure Start Plus』 ‘젊은 부모 프로젝트’	- 16세 미만 미혼모 교육이수 의무화 - 16세~17세 미혼모에 주택 제공 - 출산전후 최대 18주 결석 인정 - 아동 양육 세제감면
독일	『아동·청소년 지원법』 『모성보호법』 『아동수당법』 각 주의 교육법	- 보육시설을 우선 이용할 수 있는 권리 - 아동수당 지급 - 사회교육적 개별보호 - 수업자료 무상지원 - 임신·출산 결석시 출석처리 및 휴학 인정
대만	출산휴가제도	- 2007. 9.부터 시행. - 출산휴가 56일, 육아휴가 2년, 출산·육아휴가 기간 출석 인정, 성적은 휴가후 재시험으로 대체
일본	특별한 제도는 없음	- 교육보다는 취업지원 교육훈련에 초점

3) 본 보고서의 내용은 국가인권위원회가 2007년도에 실시한 인권상황 실태조사 연구용역보고서 <청소년 미혼모의 교육권 보장 실태조사>의 내용을 요약한 것임.

1. 미국

가. 교육권 보장 정책

- 1) 1972년 교육부 성명 : “미국의 모든 소녀는 자신의 직업과 가족생활 그리고 시민생활을 준비하기 위하여 자신들의 교육받을 권리와 욕구를 가지고 있다. 결혼을 했거나 임신은 했다는 것이 그녀에게서 교육과 건강한 시민이 될 수 있는 기회를 박탈할 충분한 이유가 될 수 없다”
- 2) 1972년 교육법안 제9조(Title IX : 1975. 7. 효력 발생) 연방기금을 받는 학교는 단지 임신 또는 임신과 관련된 조건에 근거하여 학생을 교육에서 제외시키는 것을 금지
- 3) 「개인적 책임과 근로기회에 관한 법안」 PRWORA(Personal Responsibility and Work Opportunity Reconciliation Act, 1996) : 각 주가 혼인 외 출산을 예방하고 교육프로그램을 강조하도록 요구

10대 부모들은 시간 제한적이고 노동을 요구하는 TANF(Temporary Assistant for Needy Families)를 받을 수 있는데, TANF는 수혜대상자에게 학교에서 학업을 지속하고 어른이 보호하는 집에서 거주할 것을 요구하여 고등학교를 다니지 않거나 이에 상응한 훈련 프로그램에 참여하지 않을 경우 TANF 기금을 지급하지 않음.

나. 학업지속을 위한 서비스 및 프로그램

1) 일반학교 내 교과교육프로그램 : TAPP (Teenage Parenting Program)

임신한 청소년 교육을 위한 가장 일반적으로 프로그램. 임신 때문에 학교를 중퇴하는 것을 방지하고 임신기간 중 학업을 계속하도록 돕기 위해 의료서비스와 사회복지서비스 등 제공. 학교 내 10대 미혼모를 위한 특별학급과 탁아시설 운영하며 학업과 육아 성취, 양육을 위한 준비, 아동에 대한 보호까지 포함.

2) 주 지원 학교기반 서비스 : LEAP(Learning, Earning & Parenting)

학교 또는 GED(General Educational Development, 검정고시) 프로그램에 등록하는 10대 미혼모에게 재정적 인센티브를 줌. 아래 <표 1> 참조.

<표 1> 미국 오하이오주의 LEAP 프로그램 내용

구성요소	제공(자)	기간	내용
재정 인센티브		프로그램 내내	학교 또는 GED 프로그램에 등록하면 학교에 다니는 동안 매월 복지 급여 외 \$62를 더 지급함. 10대 미혼 모들이 출석의무를 이행하지 못하면 이 재정인센티브를 받지 못함.
사례관리	사례관리자	"	10대 미혼모들이 사례관리자에게 배정되는데, 이들은 프로그램 수행을 감독하고 학교 출석의 장애물을 확인하고 도와줌.
아동보호/이동지원	프로그램	"	10대들이 학교에 출석할 수 있도록 아동보호와 이동 지원. 사례관리자의 승인 하에 제공됨.

3) 대안학교 모델

백인 밀집지역과 같이 미혼모 발생비율이 낮은 지역에서는 10대 미혼모만을 위한 특수고등학교(Mother High)를 별도로 설립 운영. <표 2> 참조

<표 2> 미국 대안학교 모델 사례

지역, 프로그램	교육 및 서비스 내용	시설
플로리다주 COPE (Continuing Opportunities for Purposeful Education)	건강보호, 교육, 아동양육훈련 및 산전 후 교육, 가족계획, 상담, 지역사회연결, 대학 교육과정, 취업상담 및 훈련, 졸업지원	학내 보건센터와 아동보육센터, 차량이동서비스 등 마련
덴버시 Florence Crittenton School	10대모를 위한 비영리기관 Parent Pathway의 중고등학교 프로그램으로 매년 약 250명의 미혼모와 60명의 미혼부에게 양육 및 아동발달교육, 중등과정 수업, 덴버 공립학교 학점 취득 및 고등과정 수업, 경력계획 및 직업준비 훈련, 개별상담, 직업교육 등 실시, 아동조기교육실 운영, 차량이동서비스 등 제공	교내 탁아시설, 10대 부와 자녀 유대감 서비스, GED 준비 수업 및 튜터링 지원, 유아 및 아동 학습센터, 가정이 없는 어린 가족을 위한 주거서비스

4) 학교 밖 지역사회 기반 프로그램

지역사회 미혼모 복지기관 등에서는 10대 청소년 부모에게 일상생활 기술과 상담과 심리치료를 통한 재사회화 및 정서적 지지, 의료보호 등을 제공함. 조지아주에서는 10대 미혼모들에게 육아건강, 양육, 재정지원편성, 식품구입과 준비 등과 같은 기본적 가정경영 기술을 가르치며, 자신감 훈련, 성교육, 갈등해결 훈련, 약물남용방지훈련 등을 통하여 예비성인으로 준비시킴.

2. 영국

가. 교육권 보장 정책 (교육부)

- 16세 미만의 미혼모들이 교육을 마치는 것을 의무화하고 이를 위해 아동보육서비스 제공. 16세~17세 미혼모 가운데 부모나 배우자와 함께 살 수 없는 미혼모들은 지도 감독이 이루어지는 준 독립적인 주택에 살도록 의무화
- 출산 전후 최대 18주 동안 학교 결석을 인정해주며, 본인이 그 학교를 계속 다니길 원치 않을 경우 대안학교 연결, 가정교사 학습이나 상급학교 진학을 위한 학습을 할 수 있도록 지역교육청에서 지원

나. 학업지속을 위한 서비스 및 프로그램

1) 청소년 미혼모 학업지속을 위한 서비스 『20 Sure Start Plus』

- 임신여성과 청소년 미혼모에게 개별 상담전문가 지원 제공. 양육모가 된 사람들이 미래를 위한 기회를 박탈당하지 않고, 교육을 마침으로써 독립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함.
- 출산 후 학업 유지를 위해 학습지원제도를 도입, 아이 돌봄 비용을 지불하여 줌. 지역 사회조직과 협력하여 10대 미혼모가 출산과 양육과정에서 학습권에서 제외되지 않도록 지원해주고, 직업훈련 등을 통해 자립력을 키워주는 방향으로 개입
- 1999년 교육부 산하에 'The Teenage Pregnancy Unit'을 두어 서비스 전달 및 운영의 주체로서 활동하도록 하고 있음. 보건부, 교육부, 부총리실, 고용 및 연금과, 가정과가 재정을 함께 부담하는데, 2000년 ~ 2002년간 약 60백만 파운드의 재정을 지원

- ① 청소년 미혼모를 위한 교육과 훈련 : 정부는 청소년 미혼모가 교육에 참여할 수 있도록 실천 지침서를 제작·발간하였고, ‘10대 임신관련기금(Teenage Pregnancy Standards Fund)’을 설립하여 청소년 미혼모를 지원하기 위해 학교에 연 5백만 파운드(약 88억원) 지원. 또한 청소년 미혼모가 보육을 포함한 학습 장벽들을 극복하고, 학업, 직업훈련, 고용에 복귀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시범사업 운영 ‘교육유지수당(Education Maintenance Allowance : EMAS)’은 청소년들이 학업을 계속할 수 있도록 주급으로 수당을 제공하고, 학업 성취에 따른 보너스를 제공함으로써 청소년들이 학습 잠재력을 극대화할 수 있도록 도와줌. 최대 3년까지 지원받을 수 있음.
- ② 청소년 미혼모를 위한 소득지원 : 『20 Sure Start Plus』 시범사업은 청소년 미혼모들에게 개별 전문상담가를 제공하여 자립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10대 아버지가 보육에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함. 청소년미혼모는 소득 보전을 위해 18세가 되었을 때 ‘소득지원 및 고용촉진수당(Incomes Support and Job Seekers Allowance)’을 25세 이상이 받는 비율로 받음. 18세 이하 청소년 미혼모는 아동수당 및 가족수당과 같은 또래의 청소년들보다 두 배 많은 실업수당을 받음. 『모자가정에 대한 새로운 대책(New Deal for Lone Parents)』에 참가하고 있는 모자가정부모는 근로를 할 경우 아동보육에 대한 비용을 지원받으며, 직업훈련을 받을 시 주당 15파운드의 훈련비를 지원받음. 청소년 미혼모는 『아동양육 세제감면(Childcare Tax Credit)』을 청구할 수 있으며, 미혼모의 아동이 그들의 조부모와 생활하게 되는 경우 조부모들이 세제감면을 청구할 수 있음.
- ③ 청소년 미혼모를 위한 주택지원 : 18세 이하이면서 부모 혹은 파트너와 함께 살 수 없는 모든 10대 부모 가장은 주거공간을 제공받음. ‘주택 프로젝트’는 주거공간 제공과 더불어 효과적인 예산 관리 및 부모교육을 함께 제공하여 독립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지원. 주거시설은 24시간 현지 지원을 받는 호스텔에서부터 독립적인 아파트 등을 지원받음.

2) 청소년 미혼모 프로그램의 사례 : 썬더랜드의 ‘젊은 부모 프로젝트’의 내용은 다음 <표 3>과 같음.

<표 3> 썬더랜드 ‘ 젊은 부모 프로젝트’ 내용

대상	서비스 내용
16세 미만 청소년 미혼모	정규학교에 다닐 수 없는 미혼모를 위해 주 3회 수업 제공 보건방문자가 주1회 1시간씩 방문, 조산원 직원이 2주마다 1회씩 산전관리 프로그램 제공
16세 이상 청소년 미혼모	탁아소는 주 3일(화, 수 목) 개원, 아동들이 탁아소에 있는 동안 미혼모들은 수업에 참여. 수업은 Bride Connect를 통해 1주일에 2일, 약 30주 동안 운영, 미혼모들이 자아존중감 및 자신감 향상시키면서 자격증을 취득하도록 도우며, 공예, 요리, 부모교육, 개인위생 및 여가, 놀이활동, 안전 등에 관한 내용을 수업. 탁아소가 문을 닫는 월, 금요일에는 아동과 함께 할 수 있는 활동 제공 방문센터에서는 친구들과 주택지원 담당자, 보건방문자, 경력연결조언자 등 전문가를 만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며, 장난감도서관 서비스 등 제공

3. 독일

가. 교육권 보장 정책

- 『아동·청소년 지원법』(Kinder- and Jugendhilfegesetz : KJHG) : 10대 청소년들이 독신 부모가 되었을 경우 겪을 수 있는 문제들 -학교 교육의 지속, 다른 가족 구성원과의 관계, 보육시설 이용 기회의 제한 등- 을 해결할 수 있는 사회복지정책 규정
- “아동·청소년은 개인적· 사회적 차원에서 성장하기 위한 도움과 어려운 삶의 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는 도움을 받을 권리가 있다” (KJHG 제1조 3절)
“독일에 거주하는 만 3세 이상 6세 이하 아동은 적절한 보육시설에서 보호받을 권리가 있고, 독신부모가 (취업)교육 과정에 있거나 취업활동을 하고 있는 경우에는 다른 아동보다 우선하여 보육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권리를 갖는다”(제24조)
- 사회교육적 개별보호 : 14세 이상 18세 미만 청소년은 사회통합과 자주적인 삶을 살아가는 능력을 키우기 위하여 개별적이면서 집중적인 보호를 받을 권리를 가짐.
- 독일에서는 혼인여부와 관계 없이 여성이 부양해야 할 아동을 데리고 가게를 이끌어

나가는 경우를 모두 포함하여 ‘독신모’ 개념을 사용하며, 10대 독신모의 경우 학업을 유지하면서 육아를 할 수 있도록 시설 거주를 권장. 독신모 지원 정책의 내용은 아래 <표 4>와 같음.

<표 4> 독일의 독신모 지원 정책 내용

일반적인 지원 내용	10대 독신모 우선 지원 내용	법적 근거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권리	도움을 우선 받을 수 있는 권리	아동·청소년 지원법 제1조 3절
보육시설 이용 권리	보육시설을 우선 이용할 수 있는 권리	아동·청소년 지원법 제24조
임신·출산 때 고용보호 및 모성보호수당	지원 내용 동일	모성보호법
아동수당	무상보상의 개념으로 아동수당 지급	아동수당법
취업활동으로 생기는 아동보호비용 지원	지원 내용 동일	소득세법 제24조
최저생계비 보조와 주거수당	시설거주를 통해 해결	아동·청소년 지원법
-	사회교육적 개별보호	사회법전 8권
-	수업자료 무상지원	각 주 교육법
-	임신·출산으로 인한 결석시 출석처리 및 휴학 인정	각 주 교육법

나. 학업지속을 위한 서비스 및 프로그램 (거주시설 서비스 중심)

- 1) 시설 : 보호자와 보호를 받는 10대 독신모 수 비율은 2:1을 넘지 않으며, 보호자는 보육사, 사회교육사, 사회복지사 등으로 이루어짐. 아침에 체시간에 일어나 아이의 먹을 것을 챙겨주고 독신모가 학교에 갈 준비를 스스로 할 수 있도록 지도하는 것을 시작으로, 독신모가 학교에 간 사이에 아이는(0세~3세) 시설 근무 아동보육사가 돌봐주고, 방과후 독신모가 양육 전담
- 2) 학교 : 임신·출산 사유로 학교를 못 다니게 되었을 경우 혹은 다니고자 하는 의향이

없을 경우에는 병결로 취급, 출석으로 처리하며 휴학도 인정해줌. 학교 교육에 필요한 자료와 도구 무상지원.

4. 대만 : 출산휴가제도⁴⁾ 중심으로

- 청소년 미혼모의 임신 및 출산율이 높아지면서⁵⁾ 청소년 미혼모에 대한 인격적 차별 및 낙인으로 인해 학업을 중도 포기하는 학생이 늘어나자 출산휴가 정책 도입
- “기본적으로 교육에 대한 권리와 자기 몸에 대한 권리는 보장해 주어야 한다. 임신을 했다는 이유만으로 불량학생이나 나쁜 사람으로 낙인을 찍어서는 안된다. 이것은 학생에 대한 인격적인 차별이다”(교육부 학생국장)
- 「성평등교육법」(2004) : 학교는 임신한 학생의 교육을 받을 권리를 보호할 의무가 있으며 필요한 경우 도움을 제공해야 한다(제14조). 또한 임신한 학생이나 출산한 학생을 위해 ①교내 외 시설 구비 ②교육과정을 이수할 수 있도록 절차 마련 ③상담서비스 제공해야 함(2005년 성평등법시행령 11항)
- 출산휴가제 : 2007. 9.부터 교육부에서 시행. 56일간의 출산휴가를 신청할 수 있고, 최장 2년의 육아휴가를 신청할 수 있음. 출산 및 육아휴가 기간은 결석처리 하지 않음. 이 기간 동안 성적은 휴가 후 재시험으로 대체함.
- 정부 시책에 따라 임신한 학생을 위한 편의시설(임산부를 위한 전용 책상 마련 등)을 구비한 직업고등학교 및 10대를 위한 산부인과 클리닉 운영

5. 일본

일본은 중·고등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성인이 되어 경제적으로 자립한 후 결혼하고 출산하여야 한다는 관점의 교육을 실시, 청소년 미혼모의 교육권 보장정책은 특별히 없고, 교육보다는 자립지원교육훈련급여사업, 모자가정고등직업훈련촉진사업, 상용고용전환장려금사업 등과 같이 취업지원을 위한 교육훈련에 초점

4) 대만에 대한 내용은 2007. 7. 6. MBC 시사프로그램 <W>의 “대만의 10대 미혼모 대책”이라는 방영자료를 녹취하여 연구용역보고서에 정리한 내용을 재인용, 요약하였음.

5) 대만의 미성년 임신비율은 12.95%로, 싱가포르(8.0%), 일본(4.0%), 한국(2.8%)에 비해 높은 편임.

발 제 2



한국 사회 십대 성의 실태

서 정 애
인구보건복지협회 조사연구실장

1. 들어가기: 청소년기와 섹슈얼리티

1990년대 이후 개인주의, 소비주의 확장이라는 한국사회 변화와 더불어 인터넷, 휴대전화 등 개인미디어의 팽창으로 인해 청소년은 가족과 학교를 넘어 새로운 생활세계를 경험하고 있고, 그들 스스로가 독자적인 문화를 생산하고 향유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게 되었다. 특히 이 시기는 십대임신, 낙태, 청소년성매매 등이 이슈화되면서 청소년에 대한 성담론이 급증한 때로, 성행위비디오 제작(‘빨간마후라’), 원조교제, 교실출산 등 사회적으로 큰 파장을 던지며 청소년들이 성적주체로 등장하였다. 무엇보다 여자청소년들의 ‘자발적인 성매매’(원조교제)가 가시화되면서 청소년의 성을 둘러싼 사회적 위기감이 증대하자 이에 대한 사회적 대응으로서 「청소년성보호법」 제정을 통한 청소년성통제가 이어졌다.

청소년보호정책이 주로 청소년의 성과 관련된 것에서도 보여지 듯, 청소년의 성은 사회적으로 용납할 수 없는 매우 민감하고 불편한 이슈이자, 또한 청소년의 ‘문제적’ 삶을 설명하는 매우 중요한 요소로 여겨져 왔다(박연미, 2005). 십대를 둘러싼 사회적 조건의 변화에도 불구하고 십대의 성에 대한 사회적 인식은 ‘보호되고 계도되어야 하는 미성년의 불안정한 성’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니었기 때문에 청소년의 성은 ‘금기’, ‘일탈’이나 ‘비행’의 범주에서 접근되는 한계를 갖는다.

이와 같은 청소년의 성을 문제화하는 사회적 담론과는 달리 청소년들은 가족과 학교를 벗어나 독자적인 십대문화를 생산하고 향유하는 한편, 아이돌 스타에 대한 몰입, 팬픽, 연예인 지망, 외모관리, 로맨스, 동거생활 등과 같은 다양한 성적 욕망과 성행동을 실천하고 있다. 지금의 십대는 성을 금기시하는 기성세대의 도덕적 엄숙주의와 성은 좋고 유용한 것이라는 소비자본주의 시대의 선정주의 세례 속에서 생산보다는 소비에, 금욕보다는 쾌락에 친근하며, 금기시된 성적욕망을 마음껏 실험하고 즐기기도 한다(김영옥, 2005).

십대들이 스스로를 학생으로, 노동시장에 참여한 노동자로, 연애를 하거나 동거커플로 살아가는 로맨스 주체로 그리고 십대엄마로 다중적으로 정체화하는 현상은 이러한 변화된 십대의 지위를 잘 보여준다. 그렇기 때문에 ‘학생’, ‘미성년’으로 범주화함으로써 무성적 존재라는 단일 특성으로 십대집단을 묶어내기 어렵다.

2. 십대 성의 실태: 성적 경험, 임신, 출산

십대청소년의 성태도에 관한 실태조사는 공통적으로 십대들의 신체발달과 성경험이 저연령화되고 있다고 보고한다. 먼저 사춘기 신체 변화경험의 경우, 여학생의 월경시작 연령은 12.5세, 남학생의 몽정은 13.1세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초경경험의 경우 13~14세가 58.9%를 차지하고 있으며, 몽정경험은 14~16세가 72.6%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십대들의 성적 상상, 성적 경험과 밀접한 관련성이 있는 야동, 야사, 야설, 음란만화 등에 접촉한 비율이 높게 나타나고 있으며, 접촉하는 시기는 중학교 시기가 51.5%로 가장 높았고, 초등학교 시기도 23.8%를 차지하였다

다음으로 성관계 경험의 경우는 성관계 시작연령은 14.2세, 성관계 비율은 5%~10%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성관계경험이 있는 여학생 중 임신경험률은 13.8%로 나타났다(아하 청소년성문화센터, 2007).¹⁾ 십대의 성과 관련하여 최근의 조사에서 강조되는 것은 십대에 임신을 경험하거나 출산을 경험하는 십대미혼모가 증가되고 있다는 것이다. 2005년 여성부에서 실시한 시설입소 미혼모 실태조사 결과를 보면 십대미혼모가 전체 미혼모의 33.2%를 차지하였다. 미혼모 중 **고교중퇴 이하가 35.3%**, 고졸 47%, 대재 이상 17.7%인 것으로 나타나(여성가족부, 2005), 중고교 재학 중 임신으로 인한 자퇴나 퇴학으로 인해 학업중단을 경험하는 청소년의 비율이 높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입양아동과 요보호아동의 대다수가 십대미혼모의 아동이라는 점에서 십대들의 임신개입의 실태를 짐작할 수 있다.

이러한 십대임신은 비단 우리사회만의 현실이 아니라 십대들의 출산이 전체출산의 10%를 넘어서는 등 세계적인 현상으로 나타나고 있다. 호주의 경우 십대출산이 전체출산의 5%를 차지하고 있으며, 미국의 경우 십대출산은 전체출산의 19%에 달한다(Alan Guttmacher Institute, 2000). 미혼모의 연령별, 직업별 변화추이를 통해서 십대 섹슈얼리티 지평의 변화를 엿볼 수 있다.

연도별 미혼모 연령변화를 보면 1980년대 이후 미혼모의 20대 비율은 점차 낮아지는 반면 십대가 차지하는 비율이 점차 높아지는 것을 볼 수 있다. 이러한 십대미혼모 증가는 십대미혼모(‘리틀맘’) 관련 사이버 커뮤니티 79개, 가입회원 수 24만 명에 이르는 데

1) 실태조사 내용은 2006년 중고생(실업계고 포함) 8만 명 대상으로 수행된 ‘한국청소년의 성의식 및 성행태 조사’(산부인과 학회지 52권 10호) 및 2007년 78,593명 십대청소년의 성경험 및 성태도에 관한 실태조사(서울시 아하 청소년성문화센터)를 참고하였다.

이터를 통해서도 느낄 수 있다. 미혼모 직업변화를 살펴보면 탈학생, 또는 학생이 차지하는 비율이 점차 높아지고 있다. 이러한 변화는 십대시기에 임신을 경험하는 비율이 점차 높아지고 있는 현재상황의 반영이자 학생의 지위에서 임신을 경험하는 경우가 증가된다는 것을 함의한다.

【연도별 미혼모의 연령변화】

구분	10대	20대	30대	계
1980년대	24.9	73.2	1.9	100.0
1990년대	52.7	43.6	3.6	100.0
2000년대	53.5	43.6	2.8	100.0

출처: 한국보건사회연구원(2006)

【연도별 미혼모의 직업변화】

구분	무직	서비스	생산직	학생	회사원	기술직	자영업	단순직 (점원, 공원)	기타	계
1980년대	21.6	12.7	28.9	0.3	16.5	-	-	15.8	4.2	100.0
1990년대	48.7	2.7	13.7	8.7	15.5	-	-	2.3	8.4	100.0
2000년대	48.2	8.7	6.0	16.7	10.6	1.8	0.4	3.3	4.3	100.0

출처: 한국보건사회연구원(2006)

그렇다면 십대들이 성을 경험하고 이러한 경험이 임신, 출산으로 이어지는 현재의 상황은 십대들의 개인적인 특성에 기반하여 만들어지는 것일까? 아니면 십대를 둘러싼 복잡한 사회적 조건 속에서 구성되는 것일까?

3. 십대청소년의 성이 놓인 사회적 맥락- 십대미혼모의 사례

	A(18세)	B(19세)	C(16세)
가족	부자가족(이혼) 저소득층 가출경험	재혼가족(새엄마) 저소득층 가출경험	부모가족 저소득층, 가정폭력, 생계책임자(엄마) 가출경험
파트너	고1때 학교선배 고졸 후 기술학교 재학, 18세, 로맨스관계	고1때 친구소개로 만남 백수(탈학교상태), 20세 로맨스관계, 동정	인터넷게임 통해 만남 고졸의 백수, 20세 로맨스관계, 든든함
학교	고2 자퇴(임신이유)	고2 퇴학	고2 자퇴(임신이유)
경제활동	음식점, 전단지	마트	음식점 서빙
임신 인식	동거 중 임신 임신이 되면 키우겠다고 생각함(파트너와 헤어진 이후 임신발견해서 충격→ 임신한 이후 파트너가 다시 돌아옴)	동거→집→임신 원하지 않은 상태에서 임신	동거 중 임신 임신을 할 수도 있다고 생각
출산 결정	2개월에 임신인지→낙태생각→ 입양생각→아버지 설득해서 양육하기로 결정	2주에 임신인지→낙태생각→남자 친구와 실랑이를 벌이다 시간이 연장됨→ 남자친구와 헤어지고 입양을 생각	3개월에 임신인지→낙태생각→ 5개월째가 되면서 낙태 비용문제로 고민→ 입양생각→시설입소→ 양육결정(남자친구가 반대할 경우 혼자라도 양육할 예정)
출산 의지	아이양육은 마음에 달린 것		임신은 마음먹기에 달린 것, 사회생활을 더 일찍 하는 것
지지 체계	부/파트너가족의 양육지지	가족은 임신사실을 모르는 상태	출산이후 부모에게 알릴 예정(부모의 낙태권유 예상)
미래 설계	검정고시, 간호조무사 될 생각	돈 벌어서 가게 차리는 것	검정고시, 직업교육 받을 생각, 애 유치원 보내고 나중에 친구와 놀 생각

십대미혼모가 놓인 사회적 맥락을 분석해볼 때 미혼모경험은 저소득층 가족문화, 학교/노동시장의 변화, 로맨스문화 등과 밀접한 연관성을 갖는다. 먼저 가족 내 친밀성의 구조변동을 살펴보면 가족의 계급적 지위가 큰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평등과 개인주의라는 근대적 가치와 가족주의라는 전통적 가치가 친밀성의 변동을 가져오면서 중산층 가족은 자녀교육을 통한 출세와 성공추구라는 도구적 가족주의와 결합한 반면, 저소득층 가족은 사적안전망의 약화로 인한 친밀성의 위기에 직면하게 되었다. 빈약한 가족적 물질 토대 위에서 십대여성들이 경험하는 아버지에 의한 가족 내 폭력, 가족구성원간의 소통부재, 어머니역할 대체(‘집안일’) 등은 이들로 하여금 친밀성의 위기에 직면하도록 하였다.

이들의 탈가족 지향은 이러한 가족적 배경과 무관하지 않으며, 이들은 부모의 경제적 지원이 거의 불가능한 상태에서 놀고 싶고, 돈도 벌고 싶어서 가출한다. 또한 이들은 돌봄과 안정감이 상실된 자신의 가족과는 다른 새로운 가족을 욕망함으로써 동거생활을 통한 독립가구를 만들기도 한다. 십대의 가출가운데 특히 십대여성의 가출이 십대남성보다 높은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2008년 경찰청 가출청소년 신고건수를 보면 가출청소년수가 한 해 기준으로 15만 명을 넘어서고 있으며, 이중 남자청소년 5,024명, 여자청소년 10,303명으로 여자청소년의 비율이 남자청소년의 두 배에 달하는 것을 알 수 있다. 십대시기의 가출은 많은 경우 장기결석 등과 같은 탈학교 양상으로 이어지며, 남자친구와의 동반가출이나 가출 후 동거관계에 들어가는 경우도 흔히 볼 수 있다.

다음으로 학교/노동시장의 영향이 있다. 십대가 많은 경우 ‘학생’으로 정체화됨에도 불구하고 미래의 전망이 부재한 저소득층 청소년에게 성적, 입시중심의 학교는 굳이 참아가며 버텨야하는 동기를 부여하지 못한다. 이들이 학교로부터 멀어지는 원인으로는 규율, 입시중심의 학교체계 등 학교 내적요인과 더불어 청소년고용이 확대된 노동시장 변화를 들 수 있다(서정애, 2009). 이들은 검정고시, 자격증 취득을 예상하면서 학교를 벗어나거나, 학교 밖 노동에 참여하면서 형식적으로 학교에 다니는데, 이 경우 학교는 구체적인 보상을 주는 요인으로 인식되기보다는 장애요인으로 인식된다.

하지만 저소득층 십대여성들의 학교인식과 경험을 간단히 규정짓기 어려운데, 그 이유는 종종 이들이 학교생활과 관련하여 모순적인 양상을 드러내기 때문이다. 이들은 ‘학력이 삶에서 중요한 자원이 되지 않는다’는 인식을 하는 한편으로 고등학교 졸업장 정도는 있어야 사회생활을 하는 최소한의 보루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또한 십대미혼모의 서사를 보면 학교생활에 염증을 느끼면서도 동아리활동, 친구관계, 교복입기 등에 대

한 애착을 강조하기도 한다. 임신을 숨긴 채 학업을 지속하려고 했던 고등학교 3학년인 한 십대미혼모는 자신의 ‘임신이 학생으로서 잘한 것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나쁜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자신에 대한 학교의 강제적 자퇴조치에 분노하기도 하였다²⁾. 이렇게 다수의 십대미혼모에게 학교 다니기가 ‘돈 벌고 놀 수 있는 기회를 축내는 시간’으로 이해되기도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 임신을 했다는 이유로 학교에서 자퇴를 권고하는 상황이 아니라면 굳이 벗어나고 싶은 공간은 아닌 것이다.

십대들의 노동시장 참여는 이러한 신자유주의경제 하의 고용구조의 서비스업 집중화 현상과 맞물려있다. 1990년대 이후 서비스경제의 성장으로 인해 여성과 청소년층 고용이 확대되면서,³⁾ 주로 십대들은 ‘알바노동’이라는 임시직, 저임금, 단기계약직의 불안정한 노동자로 위치되었다. 하지만 이들의 경제활동 경험은 가출이후 독립가구를 유지하는 물적 기반을 제공함과 아울러 자기욕망 실현의 통로 성격을 띠고 있다. 가족적, 사회적 물적 지원이 거의 부재한 십대에게 생계형 노동은 불가피한 것이 되고 있다. 가출이후 이들의 생계유지 방식은 주로 임금수준이 낮고 고용 불안정성이 높은 패스트푸드점, 식당, 서빙 등의 ‘알바노동’에 의존하고 있으며, 상황이 더 열악해지는 경우 노래방도우미, 티켓다방, 단란주점, 안마업소 등 성산업으로 진입하는 사례도 볼 수 있다.

마지막으로 로맨스 문화를 들 수 있다. 가족의 보호 속에서 미래의 경력을 위해 학업에 매진하도록 기대되는 중산층 가족 십대와는 달리, 저소득층 십대여성들에게는 로맨스가 삶의 중요한 일부분으로 여겨진다. 또 미래를 위해 학업을 유지하는 식의 현재를 유예할 만큼 뚜렷한 삶의 전망이 부재하고, 사회적 자원이 부족한 현실은 이들로 하여금 섹슈얼리티 인식과 실천에서 변화를 이끌어내고 있다. 무엇보다 이들에게 연애는 삶의 즐거운 경험이며, 일상을 유지하거나 의미를 가져다주는 경험이다. 따라서 이러한 연애관계와 결부된 임신은 비록 원하지 않는 것이라도 낙태로 간단하게 종결할 수 없는 복잡한 사건이 된다.

이렇게 십대의 성은 단순히 개인의 문제행동이 아니라 십대들이 처한 사회적 조건과의 관계 속에서 만들어지는 복잡한 현상으로 나타난다. 이들의 섹슈얼리티는 가족과 학교가 더 이상 보호와 돌봄의 기능을 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친밀성의 위기를 경험하는

2) 서정애(2009)에서 인용한 사례이다.

3) 2005년 청소년취업자의 산업별 구성비를 보면 여자청소년의 서비스업 비율(85.4%)이 남자청소년(73.5%)보다 높게 나타나고 있으며 이중 15-19세 여자청소년의 서비스업 종사비율(88.9%)이 가장 높게 나타나고 있다(청소년백서, 2006).

십대들, 그리고 빈약한 사회적 자원으로 미래의 삶에 대한 상상력을 갖지 못하는 십대들을 둘러싼 사회문화적 조건의 반영이다. 무엇보다 계층적 변수는 이들의 섹슈얼리티를 설명하는 중요기반을 제공하는데, 임신한 저소득층 십대여성들의 사례는 이들의 섹슈얼리티가 성적 상상, 그리고 성적 행위를 넘어서서 임신, 출산, 양육을 포함한 재생산영역으로 확장되고 있음을 말해준다.

4. 나가기: 십대의 성과 성적권리?

지금까지 십대의 성에 대한 우리사회의 접근은 충동적이고 무분별하기 때문에 지도하고 통제해야 할 미성숙한 성이거나, ‘순진한’ 아이들을 유혹하는 외적 조건으로부터 보호해야 할 수동적인 성으로, 그리고 가부장적 성문화의 피해자로서 십대여성의 성을 강조하는 방식이었다. 하지만 가족과 학교가 더 이상 십대의 정체성 형성에 특권적인 위치를 차지할 수 없는 상황에서 빈약한 물질, 정서적 토대에 놓인 저소득층 십대들이 경험하는 친밀성의 위기는 로맨스, 새로운 가족에 대한 기대와 결부되면서 성적욕망의 실천으로서 성행동의 적극적인 변화를 이끌어내고 있다.

이와 같은 맥락에서 십대의 성을 논의하기 위해서는 십대의 성을 ‘문제적’ 성으로 진단하는데 급급할 것이 아니라 성에 개입하고 있는 십대들이 처한 사회적 조건과 더불어 이들의 목소리, 욕망 등 내적 구조에 대한 이해가 선행되어야 한다. 십대의 성이 성적관계에서 임신출산이라는 재생산영역으로 확장되는 상황에서 십대들을 위한 성교육은 성관계를 연기시키고 성행동을 억제하고 금기시하는 틀 안에서 유효성을 가지기 어렵다. 십대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자유와 자율, 도전과 실험, 정착과 이탈이 진행되는 역동적인 집단으로 이들을 이해하고, 그 이해에 적합한 관계맺기를 시도하는 다양하고 통합적인 고민을 수행할 필요가 있다(김영옥, 2005).

여기서 우리는 십대들의 성적권리를 고려해볼 수 있다. 성적권리(sexual rights)란 섹슈얼리티와 관련된 인권을 의미한다.⁴⁾ 이는 섹스, 섹슈얼리티, 젠더 등에 근거한 다양한

4) 2008년 IPPF 성적권리(sexual right) 선언문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right to equality, equal protection of the law and freedom from all forms of discrimination based on sex, sexuality or gender. 2. the right to participation for all persons, regardless of sex, sexuality or gender, 3. the rights to life, liberty, security of the person and bodily integrity 4.right to privacy 5. right to personal autonomy and recognition before the law 6. right to freedom of thought, option and expression right to association 7. right to health and to the

행태의 차별로부터 자유로울 권리로서, 평등권, 건강권, 사생활권, 교육권, 임신·출산결정권 등을 포함하는 포괄적 권리이다. 즉 십대의 경우라도 원하지 않는 경우 임신을 피할 수 있고, 원하는 경우 출산을 할 수 있는 권리가 보장되어야 하며, 또한 임신과 출산으로 인한 어떠한 차별도 받지 않을 권리가 인정되어야 한다.

대표적으로 십대임신에 대한 대만사회의 사회적 대응은 우리사회와 매우 다른 방식의 접근을 보여주고 있다. 대만은 성평등교육법(2004)을 통해서 임신한 학생의 교육권을 보장하고 있으며, 임신한 학생을 위한 상담조례규정-학교는 학생이 임신, 출산, 낙태를 한 것으로 차별할 수 없다. 임신한 학생의 출석, 결석, 출산휴가 허가에 있어서 융통성을 두어야 한다.을 두고 있다. 이들의 교육권 보장은 십대엄마들이 기초교육에서 배제되면 사회생활을 지속하기 어렵다고 보며, 때문에 이들의 특수성을 이해하여 처벌보다는 도움을 주는 것이 사회적 의무라는 인식에 근거하고 있다.

십대들의 성적 권리는 십대여성의 임신을 문제적으로 보는 인식에서 벗어나 이들이 임신으로 인해 경험하게 되는 다양한 장애들을 어떻게 극복하게 할 것인가 라는 관점에서 고려되기 시작해야 한다. 십대를 둘러싼 나이, 젠더, 계급 등의 변수는 십대들이 성적 권리를 확보하는 과정에서 ‘장애요인’이 아니라 사회적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차이’로서 고려되어야 한다. 예컨대 십대임신의 경우 출산하는 십대여성의 몸에 대한 존중과 더불어 출산을 선택한 여성에 대한 권리가 보장되어야 하며, 이들의 학습권과 양육권이 공존할 수 있도록 인식변화와 함께 제도적인 지원체계에 대한 고민이 모색되어야 한다.

참고문헌

이임순 외(2009), “한국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한 성행태 조사”, 한국산부인과 학회지 제 52권, 10호.

아하 청소년성문화센터(2007), 십대청소년의 성경험 및 성태도에 관한 실태조사.

김영옥(2005), “십대여성의 섹슈얼리티: 재현과 현실사이에서?”, 청소년문화포럼, 한국 청소년문화연구소.

benefits of scientific 8. right to education and information 9. right to choose whether or not marry and to found and plan a family, and to decide whether or not, how and when, to have children 10. right to accountability and redress(IPPF, 2009, Sexual right: an IPPF declaration Pocket guide)

- 박연미(2005), “청소년기의 ‘개념화’와 청소년의 성”, 서울대 사회학과 석사학위논문.
- 서정애(2009), “십대여성의 임신과 ‘모성선택’에 관한 연구”, 이화여대 여성학과 박사학위논문.
- Yi-Chun Chen(2009), "십대임신정책 시행에 따른 교육효과“, 대한민국 청소년성교육의 새로운 비전과 모델제시를 위한 국제심포지엄 자료집, 탁틴내일 청소년문화센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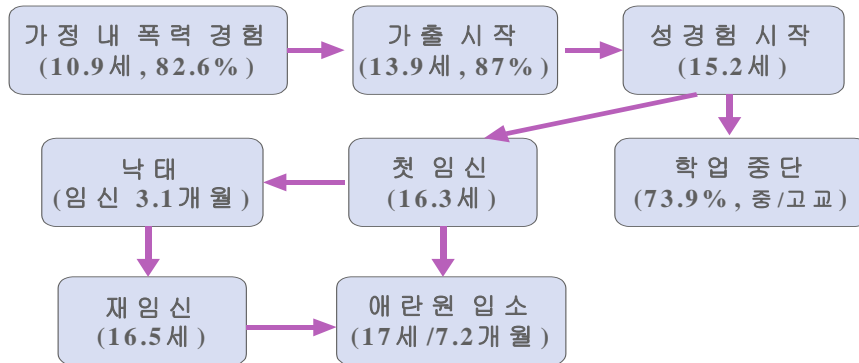


10대 엄마들의 학습에 대한 욕구

한 상 순
애란원 원장

1. 청소년 미혼모의 발생원인 등 메커니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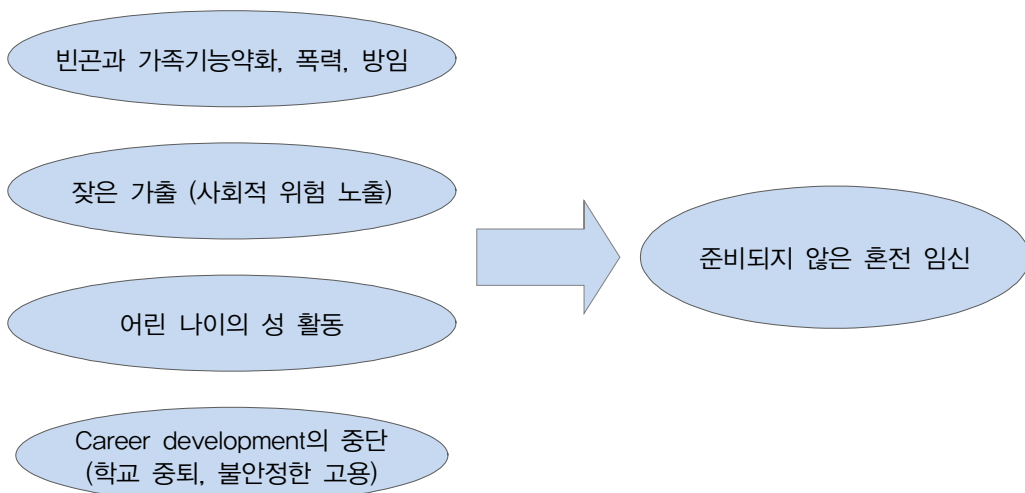
1) 10대모의 임신 경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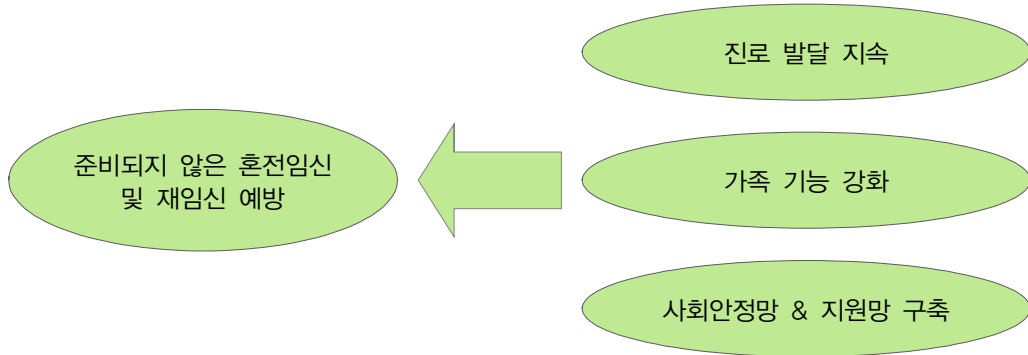
* 2001~03년 8월까지 애란원에 입소한 청소년 미혼모 308명의 case study 결과

* 2004년 20명의 질적 조사에서 동일 임신 경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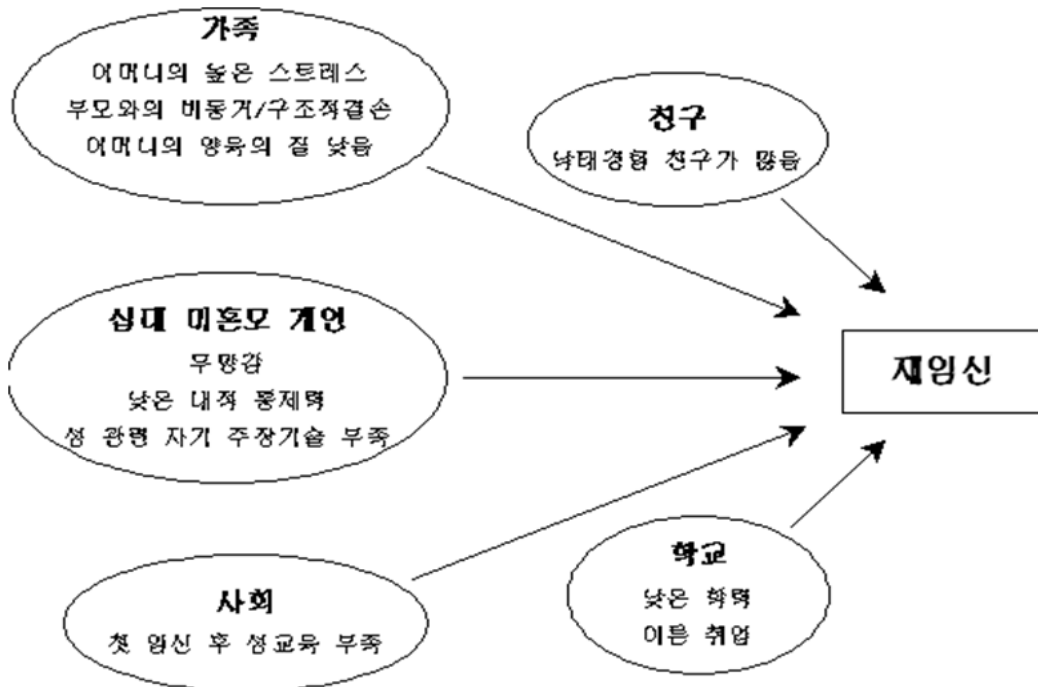
2) 임신 위험요인



3) 임신 보호 요인



4) 재임신 요인



2. 사례:

1) 사례1: 출산 후 아기 양육 선택으로 고등학교를 자퇴한 경우

- * 나이: 17세 * 학력 : 고 1 재학 (시설 입소후 자퇴)
- * 입소일 : 2009년 12월 (임신 10개월)
- * 입소 당시 상황 : ○○는 고등학교 상급생인 미혼부와 2년 교제 중 임신했으며 부모에게는 11월 경 임신 사실 알리게 됨. 학교와 친구들에게는 임신을 숨긴 채 학교 생활을 계속하였으나 더 이상 숨길 수 없어 시설 입소함. 학교측에 임신을 알릴 경우 자퇴 권유 및 미혼모의 낙인이 따를 것 두려워서, 부모는 학교 측에 알리지 않기로 결정함. 그리고 산후조리, 아기양육을 선택하여 결국 학교를 자퇴기로 하고 추후 검정고시 원함.

2) 사례 2 : 계부의 성폭행 임신이 알려져 주위의 시선이 두려워 중학교를 자퇴한 경우

- * 나이 : 만 14세 *학력 : 중3 재학 *입소일 : 2009년 9월 (임신 7개월)
- * 입소 당시 상황: ○○는 아버지 사망후 함께 살게 된 계부에 의해 반복적으로 성폭행 당하다 임신케 됨. 임신을 알게 된 후 어머니에게 알렸으며 이후 어머니의 신고로 계부는 현재 교도소 수감 중임. ○○의 상황에 대해 이웃, 학교 등에서 모두 알게 되면서 더 이상 집에 거주하거나, 학교 출석이 힘들어 시설에 입소하게 됨. 학교 측에서는 출산 후 입양 선택한다면 이 후 내년에 복학 할 것을 제안하였으나 주위의 눈이 두려워 자퇴 후 검정고시를 선택함.

3) 사례 3 : 임신으로 자퇴 될까봐 두려워 학교에 가출로 알린 경우

- * 나이: 19세 * 학력: 고3재학 * 입소일 : 2009년 8월 (임신 9개월)
- * 입소 당시 상황 : ○○는 어릴 적부터 아동보육시설에서 성장하였고 청소년기에 시설 적응이 어려워 잦은 문제를 일으켜 여러 시설을 전전하던 중 그룹홈 입소 후 안정을 찾게 됨. 같은 시설에서 성장한 미혼부와 사이에서 임신하였고 학교에 임신을 알릴 경우 바로 자퇴권유가 따를 것이므로 현재 가출했다고 거짓으로 알려놓은 상태임. (고

1때 가출로 학업을 중단하였다가 복학한 경험이 있음).

4) 사례 4; 입양 후 양육으로 결정한 경우

* 나이: 17세 * 학력 : 고1 중퇴 * 입소일 : 2009년 8월 (임신 9개월)

* 입소당시 상황 : ○○는 아버지의 폭력, 어머니의 빚 문제로 가정 불화가 심하여 잦은 가출을 경험하고 학교를 스스로 자퇴함. 중2때 만난 동갑내기 아기아빠와 교제 중 임신 6개월에 어머니가 알고 강제로 낙태케 함. 곧 재임신하고 09년 시설 입소후 9월에 출산 함. 폭력이 심한 아버지에게는 임신 알리지 못했고 어머니는 도피로 연락 두절되었으며 아기아빠의 가족도 관심이 없어 아기의 입양을 결정하고 보냄. 그 후 몹시 괴로워하다 양육을 결심하고 되찾아왔음. 첫아이 낙태후 우울증 있으며 치료. 아기양육하면서 삶의 목표가 생겼고 현재 4월의 검정고시 시험을 준비하고 있음. 고졸 학력 취득후 적성검사 및 직업훈련 계획 중임.

3. 청소년 미혼모의 욕구.

청소년 미혼모 교육권 보장의 이슈에서 가장 큰 변수는 청소년 임신에 대한 사회의 윤리적 잣대라고 보여진다. 그렇기 때문에 청소년 자신도, 가족도, 학교 교사나 학교사회복지사도 청소년 임신은 인정될 수 없는 사실로 받아들여 인권과 학습권을 침해하는 방법들이 적용되고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

모든 청소년이 임신이 안된다는 논리보다는 청소년이 임신은 할 수 있으나 주위의 지원이 미비할 경우 본인의 학업성취 및 자립, 사회심리적인 발달단계에서 장애를 받기 때문에 본인을 위해서 임신이 예방되어야 한다는 관점을 보다 명확히 하고 시작하는 것이 좋다는 생각이다

그리고 가족이나 사회의 인식과 지원이 부족한 상태에서 임신한 청소년의 학습권과 인권을 어떻게 보호할 것인가? 하는 문제는 청소년 미혼모와 가족의 욕구에 기반하여 국가의 개입 하에 통합적인 대안이 세워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청소년 미혼모의 교육권 보장 실태조사> (홍순혜 교수)의 연구결과에서 가족과 학교 교사, 학교 사회복지사조차도 청소년 임신에 대해 거부적인 태도가 있었고 청소년 미혼모도 친구에게 알려지는 것을 두려워하였는데 이를 고려해볼 때 현실적으로 사회의 인식이 바뀌지 않는 한 대안학교를 만들어놓는다고 하더라도 낙인의 굴레를 벗어나기는 어려울 것이다. 특히 입장을 선택한 경우 출산 전까지는 가능하겠지만, 출산 이후에도 미혼모 학교를 계속 다니기를 원하지 않을 가능성이 많다.

다시 말해, 청소년 미혼모의 학습권에 대한 대안을 마련하고자 할 때는 그들의 욕구가 반영되는 융통성이 있는 제도가 만들어지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된다.

1) 공통 사항:

임신 출산 기간 중 청소년 미혼모가 산전 후 의료보호를 받으면서 모자건강을 돌보고 임신, 출산, 양육 등에 대한 필요한 정보를 기반으로 아기장래를 결정할 수 있도록 해야. 동시에 학업지속이 가능한 방안에 대한 모색과 진로 설계 상담 및 지도를 받을 수 있어야. 미혼모자시설에 있는 기간 동안 학습튜터 프로그램이나 동영상 강의 등을 통해 수업 일수를 유지시켜 주어야.

○ 양육을 원할 경우 :

- a. 양육하면서 학업을 마칠 수 있도록 돕는 데에 초점을 두어야.
- b. 이들을 사례관리하는 전담 사회복지사의 인력이 있어야.
- c. 수업시간동안 아동 care시설/ 탁아모와의 연계 필요,
- d. 방과 후에 시설이나 센터에서 부모교육을 받도록 하고
- e. 혼자서 양육하는 것이 아닌 원가족 혹은 그룹홈에 입소하여 양육토록,
- f. 수업 후 귀가 한 후, 아동을 적절히 양육하는지 사회복지사의 모니터링과 지도감독과 사례관리자에게 보고가 있도록 하며.
- f. 학업을 마친 후에는 취업할 수 있도록 직업교육과 연계해야하며
- g. 아동양육수당이 주어져야 함.

○ **입양을 원할 경우:**

- a. 입양숙려를 위한 정보, 상담 및 대안이 제공되어야 하며
- b. 입양 후 상실감을 다루는 상담이 필요하며
- c. 재임신 예방을 위한 통합적인 프로그램이 필요하며
- d. 가족의 보호기능이 약하고 학교적응이 어려운 학생들에 대한 학업유지 목적의 개별 사례관리가 필요하며
- e. 청소년 미혼모에게 다시 낙인이 될 수 있는 별도의 대안학교로 운영되는 것보다는 일반 학교에 통합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

2) 청소년 미혼모가 원적학교를 다니길 원할 경우

- 원적 학교에 복학할 수 있도록 출산 전 후의 병가 처리, 복학처리를 교사들만 알고 제도화해주는 방법이 먼저 강구되어야 하겠다
- 가족과 연계가 가능한 경우에는 학교사회복지사가 가족과 연계하여 임신 출산 과정 동안 필요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 장애학생들에게 적용되는 방문지도교사제를 도입하여 학교 수업을 따라갈 수 있도록 가정/시설(시설 거주 경우) 방문하여 학습지도토록,
- 임신 개월 수가 더해지면서 집에서 가족과 함께 거주하는 것이 어려울 경우 미혼모시설이나 미혼모지원센터와 협력하여 미혼모자시설 의뢰 및 사례관리서비스 주도록
- 나아가 미혼모 시설 내에 단기 학교가 만들어져서 출산 전 후의 복학 전 교육과정을 대행할 수 있고 이를 학습기간으로 제도적으로 인정하는 것 필요

3) 청소년 미혼모가 원적학교에 다니기를 원하지 않을 경우

- 다양한 특성의 학생들을 위한 기존의 대안학교의 위탁교육을 활용하여 원적학교 교육의 일정기간을 인정해 주는 방안을 지지한다.

- 그리고 청소년 미혼모가 학교생활에 거부적이고 학업보다는 직업교육을 먼저 받기를 원할 경우 미혼모자 지원센터와 직업훈련학교와 연계하여 직업교육과 병행할 수 있도록 한다

: 즉 청소년미혼모의 학습권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상기의 다양한 욕구를 수용할 수 있는 학교 교육 및 직업교육을 포함한 폭 넓고 장기적인 진로설계 과정이 개발되어야 하겠다.

- 임신 당시 이미 학업을 중단한 청소년 미혼모 경우

이들은 가정 내에서 안정되게 학교에 다닐 수 있는 경우가 적는데 그렇다면 가족기능을 강화하는 개입과 동시에 애란원에서 운영하는 <미혼모 재임신 예방 및 자립 지원 사업>인 <애란세움터>와 같은 안정된 주거 공간을 제공하는 그룹홈에 머물면서 중단된 학업 (직업훈련을 포함한) 을 지속하도록 돕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

중요한 것은 학교에서 임신 요인인 가정과 학교 적응 문제에 대해 미리 발견하고 임신을 예방할 수 있는 체계를 개발하여 임신 자체를 예방하는데 더 초점을 두는 정책과 제도가 마련되어야 한다.



청소년 미혼모의 교육권 보장 실태 및 지원방안

홍 순 혜

서울여자대학교 사회복지학 전공 교수

1. 청소년 미혼모¹⁾의 교육권 보장 필요성

사회의 성개방화 추세에 따라 청소년기에 성을 경험하는 청소년 수가 증가하고 있고 처음 성을 경험하는 연령도 지속적으로 낮아지고 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통계결과에 따르면 2008년 한 해 동안 19세 이하 청소년의 출산이 3,300여건에 달하였다(중앙대 일리 2008.10.13에서 재인용)²⁾. 2002년부터 2006년까지 만 19세 이하 청소년이 출산한 아동이 17,317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나 청소년의 출산은 연간 약 3,500여건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통계청, 2007; 김혜영 외, 2009에서 재인용). 입양을 선택하는 미혼모의 약 38%가 경제적 지원만 있다면 아이를 직접 양육하겠다는 의지를 갖고 있다고 보고되는 가운데(허남순·노충래, 2005), 최근 실제로 아기를 낳아 직접 양육하는 청소년 미혼모의 수도 증가하고 있다. 15~19세에 아이를 낳아 키우는 10대 미혼모를 지칭하는 ‘리틀맘’이라는 신조어까지 생겨났다.

이런 변화 속에서도 그동안 정부의 노력은 임신 발생을 예방하기 위한 성교육이나 미혼모 발생 이후의 시설 중심 서비스 제공 등에 초점이 맞추어져 왔다. 도움을 필요로 하는 청소년 미혼모들은 사회적 이탈자로 규정되고 자녀출산에 필요한 도움만을 일시적으로 제공받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정부의 현행 대책은 청소년 미혼모의 사회적응과 자립이라는 측면에서 볼 때 상당히 소극적이라고 평가될 수밖에 없다(홍순혜 외, 2007). 정부의 소극적 대책과 사회의 편견 및 차별적 태도는 많은 임신한 청소년들로 하여금 소중한 생명을 포기하도록 만들고, 출산한 청소년들에게는 아이에 대한 친권 및 양육권, 자신의 교육권과 같은 기본권을 포기하게 하는 원인이 되고 있다.

반면 유럽, 미국, 아시아의 여러 나라들은 청소년 미혼모 문제에 보다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있다. 미혼모의 발생 이후 사후적인 서비스를 지원하는 방안뿐만 아니라 교육권 보장을 통해 장기적인 자립을 보장하는데 주안점을 두고 있다. 청소년의 임신이나 출산에 대한 사회적 편견이 상대적으로 적은 미국이나 유럽 국가들에서는 임신, 출산, 육아로 인한 학생의 심리적 부담감을 감소시키고 뒤떨어진 학업을 보충하고 아동의 양육을 지원하는 서비스들을 학교 또는 지역사회에서 제공함으로써 청소년 미혼모들이 자발적

1) 여기서 청소년이라 함은 10대 (10세~19세)라는 용어와 같은 의미로 사용하며, 청소년 미혼모는 ‘법적으로 미혼의 상태에서 임신 중이거나 출산을 한 10대 여성’으로 정의한다.

2) 2006년 국가청소년위원회의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 청소년 미혼모는 년 5천~6천명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김혜영 외, 2009에서 재인용).

으로 학교를 이탈하는 사례를 줄이고 보다 안정적으로 학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우리와 같이 청소년 미혼모에 대한 부정적 시각이 강한 대만에서 조차 늘어나고 있는 청소년 미혼모의 교육권을 보장하고자 2004년 「성별교육평등법」에 임신한 학생의 교육받을 권리와 필요한 경우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명시하였으며 2007년부터는 출산 예정 학생들을 위한 출산휴가제를 도입하였다(홍순혜 외, 2007).

청소년들에 대한 교육권 보장은 「헌법」, 「교육기본법」, 「초·중등교육법」 등에 규정되어 있는 국민의 기본적 권리에 대한 보장이며 「유엔아동권리협약」 당사국으로서 이행해야 하는 아동 발달권의 보장이다. 우리나라가 아직은 중학교 교육까지만 의무교육으로 규정하고 있지만 매년 중학교 졸업자의 거의 전부³⁾가 상급학교로 진학하고 있으며, 사회에서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적어도 고등학교 이상의 학력을 갖추어야 한다는 사회적 인식을 같이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런 사회 구조 속에서 학업중단은 취업관련 지식이나 기술부족으로 이어져 이들의 사회참여의 장애요소가 되며 장기적인 빈곤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허남순·노충래, 2005). 이럴 경우 이들의 사회복지 의존을 초래하여 사회적 비용을 증가시킬 수 있다. 미혼모의 빈곤문제는 다시 아동의 빈곤문제로 이어져 아동의 건강한 성장을 방해할 수도 있다. 즉, 청소년 미혼모의 학업 중단은 ‘낮은 교육 수준 → 취업의 어려움 → 빈곤 → 아동빈곤’의 악순환을 불러올 수 있다는 것이다(홍순혜 외, 2007).

학교는 사회에서 필요한 여러 지식과 기술을 가르치는 장소이기도 하지만 학생들에게 학생으로서의 신분을 제공하여 그 시기에 기대되는 역할에 충실할 수 있도록 보호하고 지도하는 울타리 역할도 하고 있다. 2007년 국가인권위원회(홍순혜 외, 2007) 조사 당시 미혼모시설에 거주하고 있던 19세 이상의 청소년 미혼모 63명 중 71%가 임신 당시 이미 학업을 중단한 상태였다는 연구결과와 학교 이탈이 청소년 임신의 중요 예측변수라고 지적한 김만지(2004)의 연구결과를 종합해 볼 때 청소년들의 재임신 방지를 위해서도 학생들을 학교 울타리 안에 머무르게 하면서 교육을 지속적으로 받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한편 임신·출산 청소년들을 학교에서 내모는 교육제도, 이들의 교육과 자녀양육 지원에 무관심한 정부 정책, 이들에 대한 사회적 편견은 학업지속을 원하는 임신한 청소년들로 하여금 낙태가 유일한 대안일 수밖에 없도록 만들고 있다. 낙태는 건강에 치명적인

3) 통계청(2006) 자료에 의하면 2006년도 중학교 졸업자 중 상급학교 진학자의 비율은 99.8%를 차지하였다.

악영향을 줄 수 있고, 비록 청소년이라고 할지라도 출산하여 직접 양육하고 싶은 욕구가 있다면 이들의 자기결정권이 존중되어야 한다는 점⁴⁾에서 아이를 출산하고 양육하고자 하는 학생들에게는 그것이 가능하도록 사회적·제도적으로 다양한 대안이 마련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고 하겠다. 또한 이들에 대한 사회적 편견이 불식되고 다양한 지원책이 강구되지 않는다면 몰래 남의 시선을 피해 임신 및 출산 과정을 거치면서 제대로 된 돌봄을 받지 못함으로 인해 청소년 미혼모와 그 자녀는 건강권을 침해받을 수 있다⁵⁾.

이런 모든 문제점들을 검토해 볼 때, 청소년 미혼모의 교육권 보장은 미혼모와 출산한 자녀의 복지를 증진시키고 미래를 보장하는 일일 뿐만 아니라 앞으로 발생할지도 모르는 막대한 사회적 비용의 부담을 사전에 예방하는 대책이 될 수 있다고 할 수 있다. 특히 현재 임신 및 출산으로 인해 학업을 중단하는 청소년들의 상당수가 부모로부터의 사회적 지지가 적고 경제적으로 어려운 가정의 자녀들이므로⁶⁾ 이들의 학업중단은 차후 자립 실패로 이어지고 사회적 부담으로 남겨질 가능성이 매우 높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우리나라 청소년 미혼모들의 대부분은 임신사실을 알게 되면 학교로부터 자퇴나 휴학을 권유받거나⁷⁾ 스스로 학업을 지속할 수 없다고 생각하여 학업을 포기하는 상황이다. 학교교육을 지속하거나 취업교육을 이용하여 적응에 성공하는 청소년 미혼모들은 극소수에 불과하다고 할 수 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나라에서도 청소년 미혼모들에 대한 교육권을 보장할 수 있는 방안이 시급히 마련되어야 할 필요성이 있다. 이들에 대한 교육권 보장은 향후 이들의 자립과 적응을 돕는 보다 궁극적이며 적극적인 방법인 동시에 이들이 당연히 누려야 할 기본적 인권에 대한 보장이라고 할 수 있다.

-
- 4) 특히 미혼모가 고등학교 2, 3학년에 해당하는 경우는 자신의 장래를 결정할 수 있는 성숙에 도달했다고 볼 수 있다.
 - 5) 10대 산모는 생물학적인 미성숙으로 인해 임신 합병증 등 건강에 위협을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20대 산모에 비해 더 크다(Roosa, 1991; 윤미현·이재연, 2002에서 재인용).
 - 6) 2007년 국가인권위원회(홍순혜 외, 2007) 조사에서 당시 조사에 참여했던 19세 이하의 미혼모시설 거주 미혼모 63명 중 68%(43명)가 부모가 사별, 이혼, 별거한 가족의 자녀들이었으며, 이들이 인식한 가족의 경제적 상황은 어렵거나 매우 어려운 경우가 56%, 나머지는 보통이었고 잘 산다고 응답한 경우는 한 사례로 없었다. 2009년 한국여성정책연구원(김혜영 외, 2009) 조사에 따르면 166명의 19세 이하 응답 미혼모 중 30.7%가 양친 중 적어도 한 명이 생존해 있지 않은 상태였다.
 - 7) 2009년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된 ‘임신을 이유로 한 교육시설 이용 차별’사건 (09진차535)은 이러한 학교 현장의 실태를 보여주는 한 예시라고 할 수 있다.

2. 교육권의 개념⁸⁾

교육권은 ‘교육에 관한 권리’를 의미하며 ‘교육받을 권리’와 ‘교육할 권리’를 모두 포함한다. 그러나 교육권은 ‘교육받을 권리’, 다시 말해 ‘학습권’으로 이해되어야 한다. 왜냐하면 교사가 학생을 교육하는 것은 교사에게 ‘교육할 권리’가 있기 때문이라기보다는 직무로 인해 부여받은 일종의 ‘권한’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기 때문이다.

교육받을 권리로서의 교육권 내용은 국내법인 「헌법」, 「교육기본법」, 「초중등교육법」과 국제조약인 「유엔아동권리협약」 등에 명시되어 있다. 「헌법」 제31조는 “모든 국민은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헌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교육권은 학생의 교육받을 권리뿐만 아니라, 보호하고 있는 자녀를 교육시킬 의무도 규정하고 있다. 「교육기본법」에서는 학습을 받을 권리와 교육 과정에서 차별받지 않을 권리를 규정하고 있다. 「교육기본법」 제3조는 “모든 국민은 평생에 걸쳐 학습하고, 능력과 적성에 따라 교육받을 권리를 가진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4조는 “모든 국민은 성별, 종교, 신념, 인종, 사회적 신분, 경제적 지위 또는 신체적 조건 등을 이유로 교육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라고 하여 조건에 상관없는 무차별 원칙을 선언하고 있다. 차별받지 않을 권리는 「헌법」 제11조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라는 조항으로부터도 도출된다. 2007년도에 개정된 「초중등교육법」의 제18조의 4는 “학교의 설립자·경영자와 학교의 장은 헌법과 국제인권조약에 명시된 학생의 인권을 보장하여야 한다”고 학생의 인권보장을 명시하고 있다.

또한 국제협약인 「유엔아동권리협약」은 청소년들에게 어떠한 상황에서도 동등하게 교육받을 권리를 보장해야 하는 교육 당국의 의무를 강조하고 있다. 동협약 제2조는 “아동이나 그 부모, 후견인의 인종, 피부색, 성별, 언어, 종교, 정치적 의견, 민족적·인종적·사회적 출신, 재산, 장애여부, 태생, 신분 등의 차별 없이 이 협약에 규정된 권리를 존중하고, 모든 아동에게 이를 보장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제28조 1항 마에서는 아동·청소년이 학교교육을 중단하는 상황을 예방하기 위해 교육 당국은 “학교 출석률과 중퇴율 감소를 촉진하는 조치를 취해야 한다”라고 명시하고 있다. 이렇게 볼 때

8) 홍순혜·김혜래·이혜원·변귀연·정재훈·이상희. 2007. 「청소년 미혼모의 교육권 보장 실태조사」. 국가인권위원회의 내용을 요약함.

청소년의 교육받을 권리는 국내법과 국제조약이 보장하고 있으며, 어떠한 상황에서도 차별받아서 안되며, 이의 보장을 위해 국가나 학교가 노력해야 하는 기본적인 권리라고 할 수 있다.

3. 청소년 미혼모의 교육권 보장 실태

우리나라 청소년 미혼모의 교육권 보장 실태를 보여주는 좋은 사례 중의 하나가 2009년도에 국가인권위원회로 진정된 ‘임신을 이유로 한 교육시설 이용 차별’사건(09진차 535)이라고 할 수 있다. 이 사건에서 보면 양가부모의 허락을 받은 상태에서 남자친구와 교제를 하고 결혼을 약속한 상태에서 임신을 하게 된 한 고등학교 여학생에게 학교는 전학 또는 휴학을 종용하였고 학교의 압력 속에 여학생 당사자는 학교에 자퇴서를 제출하였다. 사건에 대한 진정을 접수한 국가인권위원회는 학교의 학생지도의 현실적 어려움을 감안하면서 피해 학생의 학습권을 보장할 수 있는 방안으로 피진정 학교가 해당 학생을 재입학시킨 후 대안학교에서 위탁교육을 받도록 하는 것을 제안하고 이를 함께 노력하기로 하였다. 하지만 학교는 교직원, 학교운영위원회, 학부모회 임원들을 대상으로 투표한 결과 절대 다수가 이에 반대하였고 학생생활지도에 어려움이 클 것으로 예상되어 피해 학생의 학적을 회복시킬 수 없다고 통보하였다. 이에 국가인권위원회는 피진정인에게 피해자를 재입학시켜 학업을 계속할 수 있도록 할 것을 공식 권고하고 해당 광역시 교육감에 대해서는 재학 중 임신한 학생이 학업을 계속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여 시행할 것을 권고하였다. 이 사례를 통해 교육현장에서 임신으로 인한 교육 차별이 발생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10대 미혼모의 특성을 연구한 윤미현·이재연(2002)의 연구에서 보면 청소년 미혼모의 교육정도는 중학교 이하(중퇴 및 졸업)인 경우가 31.6%, 고등학교 이하(중퇴 및 졸업)가 61.5%로 나타났다. 미혼부모에 관해 포괄적 조사를 실시한 한국여성정책연구원(김혜영 외, 2009)의 연구결과에서도 이와 유사하게, 조사된 171명의 19세 이하 미혼모 중 26.7%가 중졸이하, 52.6%가 고등학교 재학, 휴학 또는 중퇴의 교육수준을 보였다. 이런 결과들은 청소년 미혼모의 학업중단 문제가 심각함을 지적하고 있다. 또한 임신에 대한 학교 조치에 대한 응답(윤미현·이재연, 2002)에서, 학교에서 임신 사실을 안 경우 자퇴

하라고 했다는 응답이 약 20.0%, 알아서 자퇴했다는 응답이 약 20.0% 정도로 나타났다.

2007년 국가인권위원회(홍순혜 외, 2007) 용역연구에서는 당시 미혼모 시설에 거주하고 있던 19세 이하의 청소년 미혼모 63명을 조사하였는데, 이 중 18명이 임신 당시 학교에 재학하고 있었으나 고등학교 3학년 말에 임신하여 출산 전에 성공적으로 졸업을 할 수 있었던 1명을 제외한 전원은 중퇴, 휴학, 또는 장기결석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재학 당시 학년은 고등학교 1학년과 2학년이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고등학교 3학년, 중학교 2학년, 중학교 3학년 순으로 나타났다. 이들 18명 중 학교가 임신사실을 인지한 경우는 6명이었는데 모두 휴학 또는 자퇴 권고를 받은 것으로 보고되었다. 나머지 12명은 학교에 임신 사실을 알리지 않은 채 다른 이유를 대고 현재 휴학이나 장기결석 중이었다.

2008년도에 교육과학기술부의 지원으로 이루어진 용역연구(제석봉 외, 2008)에 의하면 조사대상 청소년 미혼모 73명 중 임신 당시 학교에 재학하고 있던 청소년이 43%인 31명이었으며 학교가 임신 사실을 인지한 경우는 22명이었으며 이 중 학교로부터 휴학 또는 자퇴 권고를 받은 경우는 5명, 약 23%이었다.

위의 연구결과들을 볼 때, 학교현장에서 임신 및 출산으로 인한 교육권 침해가 발생하고 있으며 “당사국은 학교의 정기적 출석과 탈락률 감소를 장려하기 위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유엔아동권리협약」의 규정과 배치되는 조치들이 취해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대부분의 청소년 미혼모들은 임신 이후 학업을 중단했음에도 불구하고 강한 학업지속 의지를 보이고 있었다. 2007년도 국가인권위원회 조사에서는 응답자의 81%가 학업지속을 희망하였으며 2008년도 교육과학기술부 조사에서는 학업지속 의지가 강하거나 매우 강한 경우가 59%, 보통의 의지까지 합하면 96%나 되었다.

학업지속에 대한 의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청소년 미혼모들이 임신 이후에 자발적 또는 비자발적으로 학교를 떠나는 이유는 크게 두 가지로 생각해 볼 수 있다. 첫째는 청소년 미혼모를 바라보는 사회와 학교의 부정적 시각이다. 2007년도 국가인권위원회 조사에서 학교가 임신 사실을 알았던 6명의 청소년 미혼모들은 모두 학교가 임신 사실에 대해 무관심하거나 비난적이었으며 휴학이나 자퇴를 권고하였다고 응답하였다. 학교가 미혼모에게 휴학이나 자퇴를 권고하는 근거는 학생으로서의 신분에서 벗어나는 행동을 하였다고 보고 이에 대한 징계적 조치를 취하는 것이며, 또한 학생의 임신이나 출산이 다른 학생들의 학습권을 침해한다고 보는 것이다. 2007년도 국가인권위원회 연구에서 조사된 교사 247명 중 56%인 138명이 임신 및 출산은 학교 징계 대상이 된다고 응답하였으며 74%인 185명의 교사가 임신 학생의 재학이 다른 학생들에게 ‘매우’ 또

는 ‘약간’ 위해할 것이라고 응답한 결과가 이런 사실을 반영한다고 하겠다. 같은 조사에서 약 70%의 청소년 미혼모와 약 90%의 교사들이 청소년 미혼모에 대한 우리 사회의 전반적 인식이 상당히 부정적이라고 보고하고 있는 점도 맥을 같이 한다.

그러나 임신 또는 출산한 학생의 재학이 다른 학생들에게 위해하거나 그들의 학습권을 침해한다고 생각하는 이유는 실증적인 근거에 의한 것이 아니라 단지 교사를 포함한 우리 사회가 청소년 미혼모들을 부정적으로 인식하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라고 볼 수 있다. 2007년 국가인권위원회 조사에서 많은 교사들이 미혼모의 자립을 위해 현실적으로 가장 적합하고 시급한 정부차원의 지원이 미혼모에 대한 사회적 편견의 감소라고 지적한 점을 보아도 잘 알 수 있다.

학교가 청소년 미혼모의 교육권을 제한함으로써 돌아오는 효과는 청소년들의 임신 예방이나 성활동의 자제가 아니라 낙태의 성행, 모권에 대한 여성의 자기결정권 제한, 청소년 미혼모에 대한 사회적 낙인화, 교육중단으로 인한 청소년 미혼모의 자립능력 저하 등이다. 실제적으로 따지고 보면 현재 학교가 엄격하게 제한하고 있는 것은 출산을 할 수 밖에 없어 임신을 지속하고 있거나, 출산을 하여 아동을 양육하게 되는 청소년들이며, 성활동이나 낙태로 이어질 임신 자체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관대하거나 무관심하다. 그렇다고 보면 절실히 도움을 필요로 하는 출산 예정 또는 출산한 청소년들이 주로 희생되는 것이 된다⁹⁾.

청소년 미혼모들이 학교를 떠날 수밖에 없는 또 다른 이유는, 출산을 하게 되는 청소년들에게 특히 해당되는데, 학습과 양육을 병행할 수 있는 제반 서비스가 부족하다는 것이다. 장애학생에 대해 일반학급에서의 교육권을 보장한다함은 장애학생이 일반학급에서 비장애 학생들과 같은 교육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장애아동의 교실 내 교육을 지원하는 관련 서비스들이 제공되어야 함을 의미한다. 같은 의미에서 볼 때, 청소년 미혼모의 교육권을 보장한다 함은 청소년 미혼모들이 학업을 지속하는데 필요한 제반 서비스들이 제공되어야 한다는 것을 전제해야 할 것이다. 2007년 국가인권위원회 조사에서 청소년 미혼모들이 자신들을 위해 가장 시급한 사회적 서비스로 아동양육 정보 및 양육비 지원과 주거시설 및 생계비 지원을 포함한 사회정착지원 서비스를 들었던 점을 볼

9) 오랜 교제 속에서 발생한 임신의 경우 청소년 미혼모가 처음부터 출산을 희망하는 경우도 있다. 하지만 학교에 재학하고 있는 학생임신의 경우는 임신 사실에 대한 정확한 파악의 지연, 낙태 등을 포함해 필요 정보를 제공해 줄 수 있는 가족, 친구 등 사회적 지지망의 결핍,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한 의료비용의 부족 등으로 낙태 가능시기를 놓쳐 출산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상당히 많다. 이런 청소년들은 출산과 관련하여 절실히 도움을 필요로 한다.

때 이런 서비스들에 대한 욕구를 가늠할 수 있다.

4. 청소년 미혼모를 위한 교육권 보장 방안

청소년 미혼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청소년의 임신을 예방하기 위한 대책이 가장 중요하다고 하겠다. 하지만 여러 예방책에도 불구하고 청소년의 임신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으며 출산으로 이어지는 사례도 매년 3천여 건을 넘고 있다. 오랜 세월 동안 임신과 출산으로 인해 많은 학생들이 학교현장을 떠났음에도 불구하고 이는 당연시 되고 그들의 교육권이 침해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관심을 받지 못했다. 이들의 학업중단이 가져오는 사회적 손실과 개인의 행복에 미치는 폐해를 생각할 때, 이제는 이들의 교육권 보장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할 때라고 할 수 있다.

현재 임신하거나 출산한 청소년 미혼모들은 유사한 욕구를 가진 단일 집단이 아니며 앞으로 발생할 청소년 미혼모들도 마찬가지일 것이다. 교육권을 보장받는 방식에 있어서도 희망 사항이 다를 수 있다. 2007년 국가인권위원회 조사 결과에 따르면, 임신 당시 중고등학생이면서 조사 당시 학업을 지속(휴학 또는 재학)하고 있던 청소년들은 원적학교에 계속 다니거나 원적학교의 위탁교육을 가장 바람직한 학업지속 방법이라고 생각하고 있었다. 반면 임신 당시 중고등학생이었지만 임신 후 학업을 중단한 학생들은 원적학교에서의 학업지속이나 다른 일반학교로의 전학을 바람직한 대안으로 보고 있지 않았으며 정규교육 이외의 기술교육이나 검정고시, 대안학교 진학 또는 원적학교의 위탁교육을 원하고 있었다. 이들은 자의적이든 타의적이든 임신으로 인해 정규교육에서 이미 이탈된 학생들이므로 정규교육에서의 학업지속이 자신들에게 더 이상 가능하지 않다고 보고 있었다. 마지막으로 임신 당시 중고등학교에 적을 두고 있지 않았던 학업 중단 청소년들은 검정고시나 정규교육 이외의 직업 및 취업 기술교육을 가장 바람직한 형태로 생각하고 있었다.

청소년 미혼모들이 어떤 교육형태를 희망하느냐 하는 것은 자신이 재적하고 있는 학교의 교사, 학생, 학부모 및 지역사회 구성원들의 청소년 미혼모에 대한 인식 및 태도, 아동 양육과 학업을 병행할 수 있는 경제적, 심리·정서적, 사회적 지지적 요건이 마련되어 있느냐의 여부, 학업성취에 대한 동기와 능력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을 것이다.

학생들이 이런 여건들에 따라 각기 다른 교육형태를 선호한다고 할지라도 교육권을 보장함에 있어 기본 원칙은 모든 청소년 미혼모들이 차별없이 능력과 적성에 따라 교육을 받을 수 있어야 하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이렇게 교육받을 수 있도록 여건을 마련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런 여건을 마련한다 함을 다음의 여섯 가지로 정리해 볼 수 있다¹⁰⁾.

첫째, 학생들이 임신으로 인해 학업을 중단하지 않도록 임신 및 출산에 대한 학교 현장의 태도와 조치에 대한 변화가 있어야 하겠다. 임신 및 출산으로 인한 학교 이탈을 막는 동시에 학년 지체 없이 학업을 지속할 수 있도록 유도할 필요가 있다. 휴학으로 인해 학년이 지체되면 학생들의 학교 부적응이 야기될 수 있고 학업지속에 장애가 될 수 있으므로 교육권 보장은 학교에 적을 두게 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학업결손이 생기지 않도록 하는 동시에 나이에 맞는 진급이 이루어지도록 배려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필요하다면 「교육기본법」 등을 개정하거나 교육부 지침을 발령하는 등의 방안을 생각해 볼 수 있다. 이런 방안들에서 다루어져야 할 구체적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임신 및 출산에 대한 학교 징계 및 차별 근절
- 임신 및 출산에 의한 학업결손에 대해 질병결석 처리
- 임신이나 출산한 학생이 원하는 경우 휴학 허용

특히 임신 및 출산에 대한 질병결석 처리 및 휴학 허용 등은 교육권을 보장하는 방안이기도 하면서 임신부에 대한 건강권의 보장이기도 하다. 이와 더불어 학교 내에서 임신, 출산한 학생들에게 심리·정서적 지지를 제공하고 당면한 현실적인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도록 정보, 상담, 지역사회 자원과의 연계 등을 제공할 수 있는 학교사회복지사, 전문상담교사 등의 전문가 배치도 필요하다.

둘째, 청소년 미혼모의 상황에 적절한 다양한 교육적 대안들이 마련되어야 한다. 대만이나 서구 여러 나라의 경우처럼 청소년 미혼모들이 재학하고 있는 학교 안에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도 한 방안일 수 있으나 현재 우리의 상황이나 사회적 인식 차원에서 볼 때 이런 접근은 좀 시간을 요한다고 볼 수 있다. 대안학교나 임신 및 산후조리 기간에도 교육을 지속할 수 있는 위탁교육의 활성화가 필요하다. 대안교육의 형태로는

10) 아래에 정리된 6가지 내용들은 국가인권위원회(홍순혜 외, 2007) 보고서에 제시된 내용들이다.

다음의 경우들을 생각해 볼 수 있다.

- 원적학교의 위탁교육형태로 대안학교 교육 활용 : 임신 및 산후조리 기간 동안 위탁을 맡은 대안학교 등에서 위탁교육을 제공하고 원적학교의 교육 이수로 인정
- 미혼모 학생들이 학업과 아동양육을 병행할 수 있도록 이들의 욕구를 반영한 대안학교 마련: 이미 신설 운영 중에 있는 대안학교를 학교급별로 지정하여 전문 직업교육 및 진로지도 제공. 아동양육을 지원하는 정보 및 서비스 제공
- 이미 학교를 이탈한 청소년 미혼모의 다양한 형태의 기존 학교(방송통신고등학교 등) 편입학 또는 검정고시 준비 지원

위의 제안 중 원적학교의 위탁교육형태는 임신기간이나 시설입소 기간 동안의 교육 손실을 방지하지 하는데 매우 도움이 된다. 임신 기간 동안 위탁교육을 실시하는 대안학교에서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이를 원적학교에서의 교육과 동일하게 인정해주면 임신 기간 동안 발생하는 교육손실을 줄이고 휴학 등으로 인한 학년지체 현상 등을 방지할 수 있을 것이다. 비행청소년의 경우도 처분을 받기 전 분류심사원에 있는 동안 흔히 장기결석으로 처리되어 휴학 또는 자퇴 처분되는 경우가 많았다. 이럴 경우 복학 시 학년이 지체되어 학업을 지속하는데 어려움이 뒤따르기 때문에 분류심사원에 있는 동안 위탁교육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다. 청소년 미혼모의 경우도 시설입소기간 동안 장기결석이 되면 학업지속이 어려울 수 있으므로 이 기간을 병가처리하고 위탁교육을 제공하여 학업을 유지시키는 것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원적학교의 위탁교육과 대안학교 등에서는 필요한 정규교과과정 내용의 일부뿐만 아니라 산전, 산후교육, 아동양육 방법, 직업교육 등 청소년 미혼모들의 상황과 욕구에 적합한 내용들을 교육시킬 필요가 있다.

셋째, 청소년 미혼모가 학업과 아동양육을 병행할 수 있도록 다양한 서비스가 제공되어야 한다. 미혼모 학생에게 학교를 다닐 수 있도록 허용만 한다고 해서 이들이 현실적으로 학업을 지속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경제적 문제, 주거 문제, 아동양육 문제와 같은 보다 근본적인 문제에서부터 취업지원, 심리적 지원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서비스가 필요하다¹¹⁾.

11) 아래의 제안 내용에는 국가인권위보고서에 있는 내용 이외에 기타 전문가 제안들이 일부 포함되었다.

- 한부모 가족지원서비스 확대: 청소년 미혼모에게 아동양육에 따르는 생계비, 아동양육비, 청소년 미혼모 당사자에 대한 교육비 지원
- 청소년 미혼모의 건강보호증진을 위한 의료지원 확대
- 청소년 미혼모의 경우 초·중등교육 과정을 끝낼 때까지 시설 거주 기간을 연장하고 미혼모 시설 확충 및 시설 내 서비스 확대
- 청소년 미혼모의 욕구를 반영한 취업 및 진로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 자녀양육 및 부모역할 교육 지원
- 아이돌보미 서비스 우선권 부여 및 서비스 이용기간 연장
- 학교 졸업에 대한 인센티브 제도 도입 : 졸업장 취득 시 자립지원금 지원 등
- 방문지도교사제를 활용하여 학습지원
- 지역사회 기관들 내에 청소년 미혼모 대상 서비스 신설
- 멘토링 프로그램(학습멘토링 등) 등 다양한 서비스 개발 및 보급
- 청소년 미혼모의 원가족과의 관계회복 지원 : 청소년 미혼모의 가족을 지지체계 안으로 편입시키고 가족 기능을 회복시켜 가정복귀가 가능하도록 유도
- 정서적 지지체계 구축

넷째,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동시에 이런 서비스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효율적이며 통합적인 서비스 전달 체계가 필요하다.

- 학교, 미혼모 시설, 병원, 입양기관, 보육시설, 지역사회의 다양한 자원을 함께 묶어 주는 one-stop 종합보호체계 구축
- 상담과 다양한 서비스 안내 및 연계를 책임지는 동시에 종합적 보호체계로 들어가는 one-stop 창구의 역할을 하는 기구 구축
- one-stop 기구를 통해 사례관리 실시
- 학교 현장은 학교사회복지사, 지역사회교육전문가, 전문상담교사, 보건교사 등의 전문가를 통해 청소년 미혼모 종합보호체계를 활용하여 임신 및 출산 학생을 적극적으로 지원

다섯째, 학교 교사를 포함하여 학생, 학부모 등 학교 구성원들의 청소년 미혼모에 대한 인식 변화를 유도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러한 변화는 제도나 법의 개정을 통해서도

가능하며 교육과정을 통해 유도할 수도 있으며 공개적 사회적 논의를 통한 지속적인 노력도 요구된다.

- ‘미혼모’라는 용어 대신 낙인감을 줄일 수 있는 보다 중립적인 용어 사용 필요
- 교사나 공무원 등을 대상으로 한 인권교육 실시
- 청소년 미혼모를 포함한 다양한 집단의 인권문제를 다루는 인권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중고등학교에서 실시
- 청소년 미혼모의 인권에 대해 생각해 볼 수 있는 사회적 논의의 장 마련

여섯째, 청소년의 임신 및 재임신 예방을 위한 효과적인 임신 예방교육 프로그램의 실시가 필요하다.

- 보다 효과적인 성교육 프로그램 개발
- 자존감 향상 프로그램 보급
- 친가족과의 관계 개선을 위한 개입
- 성행위 관련 상담 프로그램 실시
- 청소년 미혼모의 정확한 실태를 파악하여 정책에 반영

위에서 제시된 여러 가지 교육권 보장의 구체적 방안들 중에서 지역사회 내에 대안학교를 설립한다든가 한부모가족 지원체계를 확충하고 확대하는 문제는 상당히 경제적 여건에 의해 많이 좌우되는 반면, 특히 원적학교에서의 학업지속은 학교의 변화를 우선적으로 요구한다. 청소년 미혼모가 임신 및 출산에도 불구하고 원적학교에서 학업을 지속할 수 있도록 하려면 학교가 임신한 학생의 교육 받을 권리를 보호할 의무가 있다는 것을 명확히 인식할 수 있도록 하는 조치가 필요하다. 이는 다른 한편에서는 임신·출산한 학생은 보호의 대상이지 징계의 대상이 아니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기도 하다. 청소년 미혼모의 교육받을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서는 임신·출산으로 인하여 학업을 계속할 수 없는 학생은 질병 때문에 학교에 올 수 없는 학생과 같은 상황으로 대우하여 질병 결석 처리하며, 임신·출산·양육으로 인해 휴학을 희망하는 학생에게는 휴학처리를 해주며, 휴학 기간이 종료된 후에는 학업을 계속할 수 있도록 조치한다는 것이 보장되어야 한다. 이것이 가능하지 않으면 청소년 미혼모의 교육권과 건강권은 보장될 수 없다. 원

적학교에서의 교육이 법적으로, 실질적으로 보장되어도 모든 청소년 미혼모들이 원적학교에서 학업을 지속하리라 기대되지 않는다. 그들은 앞에서 기술한 여러 가지 이유들로 인해 임신 및 출산 기간 동안 다른 기관에서의 위탁교육을 선호할 수도 있고, 다른 학교나 대안학교로의 전학을 고려할 수도 있고, 양육에 전념하면서 검정고시를 준비할 수도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원하는 경우 원적학교에서도 학업을 지속할 수 있다는 사실이야말로 차별없는 교육의 실현이며 진정한 의미의 교육권 보장이라 할 수 있겠다.

참고문헌

- 김만지. 2004. “미혼모의 임신 연령과 관련 요인에 관한 연구”. 『청소년학연구』 5(2): 5-25.
- 김혜영 · 선보영 · 김은영 · 정재훈. 2009. 『미혼부모의 사회통합방안 연구』. 한국여성정책연구원.
- 제석봉 · 석창훈 · 차명진 · 이해정 · 윤희정. 2008. 『학생미혼모 실태조사 연구』. 교육과학기술부.
- 윤현미 · 이재연. 2002. “한국 10대 미혼모의 특성에 관한 연구”. 아동학회지 23(3): 149-169.
- 중앙데일리. 2008.10.13.
- 허남순 · 노충래. 2005. 『미혼모부자 종합대책에 관한 연구』. 여성가족부.
- 홍순혜 · 김혜래 · 이해원 · 변귀연 · 정재훈 · 이상희. 2007. 『청소년 미혼모의 교육권 보장 실태조사』. 국가인권위원회.



청소년 입장에서 본 청소년 미혼모 학습권

청소년 미혼모 당사자

우리는 배우고 싶습니다

나이는 만 18살이고 만11개월 된 아들을 양육중인 엄마입니다
이혼 후 홀로 딴 지역에 계시는 아빠와 약착같이 저희를 먹여 살리시려고 동분서주하시는 엄마, 어린 여동생이 저의 가족 전부입니다.

집에선 효도한번 제대로 못하는 철부지 딸로 학교에서는 학생부가 교실이 된 말썽쟁이로 하루하루 안에서나 밖에서나 새는 바가지 취급을 받으며 살아왔습니다.

엄마와의 틀어질 대로 틀어진 사이로 인해 저는 결국 아빠의 도움을 받아 홀로 자취를 하며 학교를 다녔습니다.

고2 여름 아는 선배의 소개로 아기아빠를 만났는데, 교제 중 그 사람에 대한 실망으로 헤어졌고 6개월이 지난 후 뜻하지 않은 갑작스런 임신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처음에 임신이란 사실을 알았을 때에는 전혀 상상도 해보지 않았던 일, 준비되지 않고 원하지 않던 일이었기 때문에 정말 눈앞이 캄캄하고 실감조차 잘 나지 않았습니다. 그때 저의 상황은 기다려왔던 고3을 코앞에 둔 고2 겨울방학이었습니다.

학교 졸업을 반드시 하기 위해선 아기를 하루 빨리 낙태하는 길 밖에는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부모님에게 말씀드리는 것이 정말 죽기보다 싫어 결국 헤어진 아기아빠에게 연락을 했으나 저와 마찬가지로 절없고 이기적이었던 아기아빠는 끝내 아무 도움도 주질 못했습니다.

그렇게 시간만 계속 흘러 개학이 다가왔고 배는 두꺼운 옷을 입지 않으면 티가 날 정도로 불러오기 시작했습니다. 아이는 이미 7개월이 지나가고 있었고 저는 더 이상 어쩔 도리가 없다 생각되어 다 큰아이를 낙태시키느니 차라리 건강하게 낳아 행복한 가정으로 입양을 해 주자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평소 애정없는 학교였지만 학교 친구들이 있었기에 저는 고등학교 졸업 때까지 어떻게 하든 끝까지 버티고자 했습니다. 친구들과의 추억과 끝까지 함께 버텨 졸업하자는 약속을 지킬 수 없다는 사실도 너무 힘들고 괴로웠습니다.

그러나 저는 학교를 자퇴하였습니다. 어쩔 수 없는 저의 상황을 원망하던 중 애란원이라는 곳을 알게 되었고 그 와중에 저를 너무 걱정한 친구들로 인하여 엄마께서 저의 지금 상황을 알게 되셨습니다. 엄마는 혼내기보다는 진심어린 걱정뿐이셨고 애란원에 들어가 아이를 입양보내기를 역시 원하셨습니다. 며칠 후 바로 애란원에 입소하였고 저는 처음에는 그곳이 너무 갑갑하고 싫었습니다. 저와 같은 처지에 있는 사람들이 많은 것도 싫었고 규칙적인 생활과 방침까지 모두 예민한 저에겐 다 짜증날 뿐이었습니다.

딱 10개월이 되고 저는 뱃속에서도 암전하던 아들을 2시간도 안 돼 건강하게 낳았고, 온갖 나쁜 짓만 하고 다니던 저에게서 열손가락 발가락 다 달린 예쁘고 건강한 남자 아이가 제 눈 앞에 누워있는 모습을 보니 차마 바로 입양을 보낼 수 없었습니다.

저는 태어나서 꼭 한번 먹게 되는 초유를 아들에게 먹여 보내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일주일만 데리고 있다가 입양 보내겠다는 결심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끝내 저는 그 결심을 지키지 못하고 그 대신 너무나도 착하고 예쁜 아기의 엄마가 되기로 마음을 먹었습니다.

아이로 인해 저는 많은 것을 잃었지만 아이로 인해 저는 너무나도 많은 새로운 것들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아이를 갖게 되면서 원하지 않았지만 학교를 불가피하게 자퇴해야 했고, 아이를 낳고 미혼모가 되었지만 아기와 의 장래를 생각할 때 학업에 대한 필요성과 중요성을 더욱 절실히 느끼게 되었습니다. 저의 못 다한 학업에 대한 욕심과 끈기, 열정을 되찾게 되었고 무엇보다도 제일 중요한 장래의 꿈을 다시 찾게 되었습니다.

저와 아이가 그렇게 세상을 향해 한 발을 내딛을 결심을 하는 데에 큰 걸림돌이 있었는데 그 걸림돌은 제가 못 다한 고졸 학력이었습니다.

대학에는 원래 관심이 없었지만 세상을 살아가면서 가장 기본이고 중요한건 최소한의 학력이 고졸학력이라는 것을 평소 잘 알고 있었기에, 애란원에서 못 다한 학업을 위해 검정고시 준비를 시작하였습니다. 하지만 공부에 대해선 끈기도 없고 열정도 없던 터라 공부가 저에게는 너무 어렵고 힘들었습니다.

검정고시 자격증과 고등학교 졸업장의 차이를 잘 알기에 학교를 알아보던 중 애란원 담당선생님으로부터 2년제 학력인정 고등학교를 소개받았습니다. 여름방학 겨울방학

없이 8개월 출석에 1년 과정을 마칠 수 있는 학교이기 때문에 저는 8개월만 다니면 되는 터라 바로 편입을 하게 되었습니다.

아이를 낳고서는 자신감도 부쩍 늘어 학력인정 주부학교라도 아이를 생각하며 잘 다닐 수 있겠지 하고 말은 했지만 학교생활은 말처럼 쉽지 않았습니다.

하루 4시간 수업이 다지만 연로하신 나이에 10대 부럽지 않은 열정 가득한 분들이 다니는 곳이라 그 분들만한 열정이 없다 생각했던 저에겐 부담도 많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평소 어른들을 많이 어려워했었는데 온통 학교에는 어르신들밖에 없어 하루하루 조심스럽고 부담스러운 면이 많았습니다.

아이가 어려 자주 아팠는데 출결 때문에 학교를 쉴 수 없는 부분도 힘들었습니다.

제가 한 아이의 엄마라는 걸 담임선생님 외엔 다들 모르셔서 대학 입시가 가까이 오면서 저의 진학여부에 대해 많이 궁금해 하시고 왜 대학에 진학하지 않는 지에 많이 궁금 하셔서 매일 매일 물어보실 때마다 아이를 키운다는 말을 할 수 없어 거짓말하는 기분도 들고 대답해 드리기도 어려워 힘든 점도 많았습니다.

아이 엄마라는 걸 숨기려 의도한건 아니지만 우리나라의 미혼모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부정적이라는 생각이 항상 맘에 있던 터라 맘 놓고 지금의 사정을 선불리 말씀 드릴 수가 없어서 그 부분도 많이 마음이 안 좋았고, 일부러 아이를 숨기는 것 같아 아이에게 미안한 마음까지 들었습니다.

그중 친해진 몇몇 분들께서는 어쩔 수 없이 제 사정을 말씀드렸는데 많이 위로와 격려를 해주셔서 정말 감사했고 어린 나이로 다들 예뻐해 주셔서 후반부에는 부담 없이 잘 다녔던 것 같습니다.

제가 이 학교를 무사히 졸업하여 고졸학력을 갖게 된 것에는 학교생활을 하는 동안 아이를 맘 놓고 봐 줄 수 있는 어린이집 지원이나 토요일 학교를 가야할 때 받은 아이돌 보미 서비스 또한 학교에 갈수 있는 큰 도움이 되었고 제일 중요한 학비지원이 애란모 자의집에서 지원되지 않았다면 지금 저는 아이를 키울 준비가 제대로 되어있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또한 생활비나 분유, 기저귀지원 등등의 육아지원비 등이 저에게 전혀 지원되지 않았다면 저는 지금 저의 꿈을 접고 온갖 아르바이트를 하며 생계비를 만들기에 급급했을 것이고 학교를 다닌다고 해도 제대로 전념 할 수 없고, 끝까지 해내지 못했을 것입니다.

학교가 끝난 후 저는 취업에 도움이 될 만한 자격증을 취득하기 위해 컴퓨터 수업을 들으러 다녔습니다. 지금 현재 애란모자의 집에서는 저와 같은 또래의 친구들 몇 명이 학력을 취득하기 위해 학력인정 학교를 다니거나 검정고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아이를 보며 공부를 한다는 것은 정말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이 아닌데 검정고시를 보기위해 밤낮 가리지 않고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미혼엄마가 되었지만 아기와 자신의 장래를 위해 성장하고 발전하는 것에 학력에 장애가 있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미혼모라는 선입견과 낙인으로 원하지 않았지만 어쩔 수 없이 학교 밖으로 밀려나가고, 하고 싶은 것을 성취하지 못하고 꿈을 접음으로서 장래를 위해 꿈꾸지 못하는 것은 슬픈 일입니다.

미혼엄마가 되니 아이와 함께 살아야겠다는 생각으로 학력에 대한 필요성을 더 느끼고, 더 열심히 생활하게 됩니다. 청소년 미혼 엄마들이 학업을 마치고 전문 교육을 받고 아이와 함께 생활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정말 열심히 살 것입니다..

2월말 저는 주부학교인 일성여고를 졸업했고 학교를 다니면서 대학에 가고 싶다는 생각도 참 많이 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미혼모가 되면서 어쩔 수 없이 포기해야 했던 제 인생의 많은 것들을 이제 조금씩 천천히 되찾고 싶고 또 되찾고 있습니다.

저는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메이크업 아티스트가 되기 위한 전문 직업교육을 받으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애란모자의집에 있으면서 지원받는 동안 제가 할 수 있는 최대한의 것들을 모두 배워 아이와 함께 자립에 꼭 성공하고 당당한 엄마, 당당한 사회인으로 바로 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청소년 미혼모 학습권과 학교 현장

강 보 선

용인 동백고등학교 교사

대부분의 고등학교 경우 남녀공학으로 선택과목에 의해 남녀 혼합반이 많다. 자연스럽게 서로에게 관심을 갖고 만나고 헤어짐을 반복하면 학생들은 성장한다.

간혹 수업시간에 커플 학생들이 함께 앉아서 서로를 챙겨주는 것을 본다. ‘어떻게 할까?’ 추워하는 친구에게 옷을 벗어서 챙겨주는 것을 나쁘다고 할 수도 없고, 그렇다고 인정할 수도 없는 상황이 생긴다. 이때 한마디 한다 “그만 좀 챙겨라. 선생님도 집에 가면 챙겨줄 사람이 있다. 애들아, 좀 심하지 않냐?”라고 말을 던지면 “심해요”, “쟤들 원래 그래요”, “짜증나요” 등등의 목소리가 터지고 이때 커플 학생들은 겸연쩍은 모습으로 좀 떨어져 앉는다.

학교의 학생생활 규정 중 징계규정을 보면 대부분 이성교제 관련해서는 퇴폐행위에 해당하는 것으로 불건전한 이성교제로 풍기를 문란하게 한 학생, 남녀혼숙 또는 남녀관계로 물의를 일으킨 자, 불미스런 퇴폐행동으로 학교 명예를 실추한 학생 등을 징계 대상으로 학교 봉사부터 퇴학까지 징계를 내릴 수 있게 되어 있다.

이러한 학교 학생생활규정은 10년 전이나 현재나 달라진 것이 거의 없다.

과거 학교에서 남녀학생들이 팔짱을 끼고 다녀도 징계를 하던 그 시기 학생을 지도했던 젊은 선생님들은 지금 중년의 교사, 20대의 젊은 선생님이 오늘의 학생들을 지도한다.

인권위 <청소년 미혼모의 교육권 보장 실태조사>에서 보았듯이 75%의 교사가 미혼모들이 일반학생에게 ‘부정적 영향’을 줄 것이라고 답한 것과 무관하지 않을 것이다.

1999년 신교수 성희롱사건 판결 이후 학교 현장에서는 의무적으로 학생들에게 성교육을 10시간 이상 시키도록 되어있고, 교사들 또한 연 2회 이상의 성폭력예방교육 관련 연수를 받게 되었다. 초기에는 강사들이 순결교육에서 지금은 학생들의 성적 자기결정권에 대한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나 사회나 학교는 학생들을 미성숙하다는 이유로 가르치고 지도할 대상으로 규격화 된 틀 안이 넣으려고 한다. ‘미성숙이란 의미와 성적 자기 결정권의 의미를 함께 이야기 할 수 있는가?’가 현장에서는 혼란을 가져오고 있는 것 같다.

근본적으로 보면 학생인권과 관계된다. 학생들에게 용모가 단정해야 공부에 집중할 수 있다며 두발규제를 시키는 것에 대해 학생들은 반문을 한다. “용모단정한 40대 어른은 범죄자가 없나요? 성숙한 어른은 범죄자가 안되나요? 성숙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학생들은 이해하지 못한다. 왜 자신의 몸이 규제의 대상이 되는지, 이것이 자신의 학습 능력과 어떤 관계가 있는지 설명하지 못하므로 지속적으로 두발에 대한 문제제기가 되는 것이다. 대학생의 경우 모두 장발인가? 아니다. 생활 속에서 자신에게 가장 자유로운

스타일을 찾게 된다.

청소년들의 성적 자기결정권에 대한 담론은 여성계에서는 많은 이야기가 되고 합일점을 찾고 있으나 학교는 전혀 아니다.

학교생활징계 규정에 있는 ‘불건전한 이성교제’의 적용범위가 어디까지인가? 불건전하다는 기준은 무엇인가? 이 점에 대해 우리는 먼저 정리를 해야 한다.

예를 들어 학교에 일찍 등교하여 교실을 돌아보다 보면 학생끼리 스킨십을 하는 모습을 보는 경우 당황스럽기도 하고 걸린 학생들은 ‘재수 없다’고 말한다. 어떤 교사는 학생부로 넘기기도 하지만 자체적으로 훈계하는 경우도 있다. 손을 잡은 것은 괜찮고, 뽀뽀를 하면 징계라는 구체적인 규정은 어디에도 없다. 학칙을 만든 이 조차도 불건전하다는 의미를 어디까지 적용해야하는지 구체적으로 고민하지 않았을 것이다. 학교 현장에서 지도하는 방법은 공공장소에서의 상식적이지 않은 행위를 하는 것을 문제를 삼는 것이다. 그렇다면 학생이 임신을 한다는 것은 불건전하다는 최고의 점이 아닌가 싶다. 그럼 자동적으로 학교교칙에 의해 퇴학이 되는 것이다. 아니면 학생을 위한다는 차원에서 남녀 학생을 강제전학 조치를 취하는 등의 징계가 일반적으로 학교에서 취해진다.

우리나라 「헌법」에는 행복추구권, 교육받을 권리가 있다. 그러면 청소년 미혼모의 학습권은 보장되어야 한다. ‘배가 불러서 수업을 받는다고 타인에게 구체적인 피해를 주는가?’ ‘나도 재처럼 따라해야지’라고 생각하는 행동에 옳기는 학생들은 없다. 여기서의 문제점은 어른의 고정관념이다. 학생이 어떻게 임신을 하나? 행실이 불량하다? 등의 생각을 갖고 판단한다. 청소년은 생물학적으로 가임여성이며, 평소 행실이 불량했다고 해서 임신을 다 하는 것은 아니다.

문제는 첫째, 청소년의 미혼모의 학습권을 인정하느냐, 아니냐?가 아니라 청소년을 어떻게 볼 것인가? 학생들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인정할 것인가, 말 것인가?라고 본다.

대부분의 성폭력 예방교육 시간에 성적 자기결정권으로 원하지 않는 상황에서는 적극적으로 표현할 것을 가르치고 있다. ‘NO’에 대한 교육을 학생들에게 해왔다면 이젠 학생들이 스스로 ‘싫은 친구가 만지는 것은 싫지만, 좋아하는 학생이 만지면 나도 좋아’라고 ‘YES’로 답하는 것이다. 이젠 교육의 내용도 바뀌어야 한다.

둘째, 변화하는 사회상에 기성세대는 변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학생들의 대부분이 중학교 때 포로노를 접한 경험이 있고, 구체적 성교육의 기본으로 학생들은 받아들이고 있다. 스스로, 친구를 통해, 인터넷을 통해 접하고 난 이후 가정에서 학교에서 배운다. 학생들에게 설문조사를 해보면 성교육은 ‘시시하다’ ‘야한 것을 보여주세요’ 와 가장 알

고 싶은 것은 대부분 피임법이다. 이미 학생들은 부모가 생각하는 것처럼 어리지만은 않다.

몇 년 전 남학생들에게 교복을 입고 콘돔을 구입해오라고 과제를 낸 적이 있는데 이 때 학부모님의 항의와 더불어 약사에게 혼났다는 학생들이 있었다. 학부모들에게 “아무 것도 모르는 애들한테 충동질을 한다” “순진한 아이를 버린다” 등의 항의를 들은 경험 이 있다. 그때 이후 학교에서는 개인적으로 콘돔에 대한 교육을 하지 않았다.

최근에 성평등연구반 활동을 하는데 남녀 학생들에게 첫 날 밤을 맞이하게 된다면 무엇을 준비할 것인지 준비해서 오라고 했다. 다양하게 가져왔는데(피임을 위한 도구를 준비한 친구들은 하나도 없었음) 준비를 못한 학생에게 물어보니 “지갑에 콘돔을 넣어두었는데 아침에 아빠에게 뺏겼다”는 것이다.

더 이상 청소년에게 성은 금기시의 대상은 아니다. 청소년의 성이 금기시 된다면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성범죄는 없어야 할 것이다. 그렇다면 우리가 변해야 한다. 원하지 않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준비하고 대비하는 교육을 학교에서 가정에서 해야 될 것이다.

셋째, 학생 인권에 대한 우리의 사고가 변화해야 한다. 경기도 학생인권조례가 전국적으로 뜨거운 이슈가 되었다. 대부분의 학생들이 찬성하는 반면 교사들은?

인권이란 누구나 누려야할 권리라는 점에서 반대하는 사람은 없다. 그러나 학생의 인권을 인정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많은 분들이 미성숙과 책임을 지지 못한다는 것에 대해 의문을 제기한다. 그렇다고 학생들의 모든 권리가 부모에게 있는 것은 아니다. 학생들 자신의 인권이 지켜질 때 타인의 인권을 지켜 줄 수 있는 능력을 키우게 된다. 사랑을 받아본 사람만이 사랑을 할 줄 안다고 했듯이 자아존중감이 높은 아이일수록 타인을 존중할 줄 안다.

내가 소중하듯이 옆에 있는 친구가 장애가 있거나, 임신을 했거나 모두 존중받아야 하는 존재임을 인식할 때 청소년 미혼모도 지속적으로 학교를 다닐 수 있을 것이다. 장애나 임신이 차별의 의미가 아니라 차이라는 것을 인식했을 때 비로소 우리는 서로를 이해하면서 함께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사회는 신자본주의의 가속화로 경쟁과 소비, 철저한 개인주의를 조장하는 문화가 전반적으로 깔려 있다. 학교 현장에서 나타나는 현상도 이와 비슷하게 나타난다. 우리 아이에게 악영향을 미친다고 생각되는 순간 학부모들은 동요하게 된다.

앞에서 언급을 했듯이 우리의 의식과 문화가 바뀌지 않는 한 청소년 미혼모의 학습권 문제는 뜨거운 감자가 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대만의 청소년 미혼모를 위한 학교 시설 사례를 공중파에서 방송을 했을 때 학교 현장은 뜨거웠다. 학교 시설을 만든다는 것 전에, 미혼모를 인정한다면 학생생활지도는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 더 논란이 되었다. 이것이 우리의 현실이다. 그렇다고 대만이 좋은 것인가에 대한 판단에 앞서 시설 담당교사의 말에 의하면 “시설을 이용한 학생들은 하나도 없었다”는 인터뷰를 들으면서 그 학교 학생들 중 한 명도 임신을 하지 않았다는 것인가?라는 의구심이 들었다. 대만 사회 또한 미혼모라는 것에 대한 낙인효과가 있는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한 적이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학생의 학습권을 보장하려는 것은 높이 인정해야 한다.

사람이 사람을 만나는 것은 아주 자연스러운 것이다. 나의 존재감은 타인을 통해서 만들어진다. 자연스러운 행위에 대해 일방적이고 주입식 통제를 통한 교육은 내면화 되지 않는다. 학생들이 스스로 인정하고 이해할 수 있도록 여유를 가지고 지켜봐 주어야 한다. 요즘 여학생들이 화장을 하고, 교복치마를 아주 짧게 입는 데 아무리 학생생활 지도를 해도 없어지지 않는다. 그러나 학생들 스스로 자아존중감을 높이고 자신의 겉모양을 상품으로 만들지 않고 자신의 내면에 더 많은 신경을 썼을 때 아름답다는 것을 느낀다면 굳이 화장이나 짧은 치마를 입으려고 하지 않을 것이다.

학교 현장은 사회의 변화 속에서 많은 혼란을 느끼고 있다. 이에 대한 해결은 학생 학부모 교사 모두가 함께 길을 마련했을 때 극복할 수 있을 것이다.



생활지도와 청소년 미혼모 학습권

오 병 서
인천광역시교육청 중등교육과장

1. 들어가며

국가인권위원회 김은미 차별조사과장님의 발제에서 제시된 미혼모 학생 사안은 인천의 여러 학교나 교육청에 많은 생각할 거리를 남겨주었다. 뒤늦게라도 인권위원회의 권고를 받아들여 학생 본인이 원하는 것들을 얻을 수 있었음은 다행이었으나, 인권위원회의 권고 이전에도 동일한 절차와 과정을 제공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인권위원회의 권고를 빌미삼아 처리할 수밖에 없었던 점은 이 사안이 학교 현장에 미치는 영향과 처리방향에 대한 고민이 컸기 때문일 것이다.

인권위원회의 권고가 있기까지 여러 달의 협의와 토론을 거치면서도 쉽게 결정을 내리지 못한 것은 우리교육 현장에서 미혼모 학생 개인에 대한 관심의 부족이라기보다는 그 학생에 대한 사안처리과정과 절차가 다른 학교와 학생들에게 미치는 영향이 어떻게 나타날지 예측하기 어려웠기 때문이었을 것이다.

교육을 학생 개인의 관점에서 바라볼 때와 보통교육이 이루어지는 인천의 45만 학생들을 염두에 두고 생각할 때 관점의 차이가 나타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오늘 논의하는 미혼모 학생의 학습권은 결국 교육의 관점이 거시적인 관점 못지않게 학생 개개인에 대한 세밀한 관심과 교육적 접근이 확대될 필요성에 대한 논의일 것이다.

2. 우리 교육청의 고민과 학습기회 제공 과정

2009년 7월 6일 우리교육청 교육감에게 학교장에 대한 경고 조치와 재학 중 임신한 학생이 학업을 계속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여 시행할 것을 권고하였다. 학교는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를 법적 효력으로 인정하여 해당 학생을 7월 13일 자로 복교조치 하였다. 두 달여의 미 등교일은 법률적 처분에 의한 출석으로 인정하였고 학교는 교육청에 학생에 대한 대안교육위탁교육을 의뢰하였다.

교육청에서는 대안교육위탁교육기관으로 연계시키기 위한 ‘징검다리 교실’을 ‘서부 Wee 센터’에 의뢰하여 학생에 대한 심리검사, 진단, 상담을 실시하였다. 한편으로는 학부모님과 전화상담을 통해 주거문제 등 생활여건에 대한 부분을 협의하여 ‘인천자모원’을 추천하였으며, 이후 인천자모원의 도움을 받게 되었다. 서부 Wee 센터의 3일에 걸친 상담과정이 종료된 후 학생·어머니와 면담을 하게 되었을 때, 학생의 밝고 긍정적인 표정과 대화내용에서 학생의 학습에 대한 의지를 읽을 수 있었고 한결 마음이 가벼워졌다. 임신한 여학생에 대한 막연히 불건전할 것으로 생각했던 인상과는 달랐기에 대안교육위탁교육기관 3기관 중 숙소인 자모원에서 전철 통학이 편리한 성산효마을학교로 배정하였다.

2학기가 되자 학생은 신체적으로 많은 변화를 보였지만 열심히 공부하였다. 그러나 대안교육위탁교육기관의 교육과정과 수능 준비는 학습목표와 내용이 다르므로 학생은 스스로 공부하며 선생님의 도움을 얻거나, 인터넷 강의 등을 통해 의존하고 있었다. 10월경 점점 몸이 무거워오면서 산전요양이 필요하다는 의사의 진단이 나온 이후 성산효마을학교에서 생활하기 어려운 여건이 되었다.

우리교육청의 특수교육지원센터를 통해 인천길병원 병원학교의 사이버 학급으로 입학시켜 산전요양과 사이버 학습을 통한 학습을 지속하도록 지원하였다. 원하던 수능을 응시하지는 못했지만 지역의 대학 세무행정학과에 합격하였고 겨울에 출산을 하였다. 학생이 원하던 학습권이 비록 소극적인 방법에 의하였지만 우리교육청이 운영하는 교육제도의 틀 속에서 미혼모 학생에게 학습기회를 제공할 수 있었다.

3. 학칙과 선도규정의 예

일반적인 학교의 학칙의 내용을 살펴보면,

제25조 (휴학)

- ① 질병 기타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하여 휴학하려는 자는 그 사유서에 내용을 증명할 만한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보호자 연서로 학교장에게 출원하여야 한다.
- ② 휴학을 허가하는 기간은 매회 3개월 이상 1년 이하로 하되 3회 이상 거듭할 수 없다.

제26조 (자퇴)

스스로 퇴학(타교 전학을 포함한다)하고자 하는 자는 보호자 연서로 그 사유를 제출하여 학교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28조 (징계)

- ① 학교장은 교육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학생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1의 징계를 할 수 있다.
 1. 학교 내의 봉사
 2. 사회봉사
 3. 특별교육 이수
 4. 퇴학처분
- ② 학교장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징계를 할 때에는 학생의 인격이 존중되는 교육적인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그 사유의 경중에 따라 징계의 종류를 단계별로 적용하여 학생에게 개전의 기회를 주도록 하여야 한다.

제29조 (퇴학 처분)

- ① 의무교육 과정에 있는 학생외의 자로서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한하여 퇴학 처분을 할 수 있다.
 1. 품행이 불량하여 개전의 가망이 없다고 인정된 자
 2. 정당한 이유 없이 결석이 잦은 자
 3. 기타 학칙을 위반한 자
- ② 학교의 장은 퇴학처분을 하기 전에 일정기간 동안 가정학습을 하게 할 수 있다.
- ③ 학교의 장은 퇴학처분을 한 때에는 당해 학생 및 보호자와 진로상담을 하여야 하며, 지역사회와 협력하여 다른 학교 또는 직업교육 훈련기관 등을 알선하는데 노력하여야 한다.
- ④ 퇴학 처분을 받은 자는 본인 또는 학부모가 인천광역시 교육청에 재심을 요청할 수 있다.

< 선도기준 >

구분	내 용	징 계				
		훈계	교내 봉사	사회 봉사	특별교육이수	퇴학 처분
근태	정당한 사유없이 무단 결석이 20일 이상인 학생				●	●
폭력	싸움, 타인 구타, 흉기 소지 학생		●	●	●	
	흉기를 폭행에 사용한 학생			●	●	●
	집단 폭행을 모의했거나 선동, 가담한 학생			●	●	●
	공공 시설물, 집기류 등을 파손 또는 방화 학생			●	●	●
퇴폐 행위	불량 서적(음란 서적)을 소지, 탐독한 학생	●	●			
	불량 비디오 및 녹음 테이프를 시청한 학생	●	●			
	불미스런 행동으로 학교의 명예를 훼손한 학생		●	●	●	●
	불건전한 이성 교제로 풍기를 문란하게 한 학생		●	●	●	
기타	기타 교육상 징계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학생	●	●	●	●	●

대부분의 학교에서 그린마일리지 시스템을 도입하면서 학교 구성원 모두가 자치적으로 규정을 제정하고 학생들 스스로 규칙을 준수하는 자율과 책임이 살아있는 학교문화를 만들어가면서 선도규정도 내용이 많이 완화되었다. 그러다보니 학칙에는 퇴학이 있는데 선도규정에서는 구체적인 퇴학의 사례가 보이지 않아 좀 더 세부적인 규정을 찾다가 인터넷에서 모 대안 고등학교의 사례를 찾아보았다.

2항 불건전 교제

교내 -

- ① 과도한 스킨십(키스, 포옹, 무릎베개, 신체접촉 등)
 - ➔ 1차 선도위원회 회부(사회봉사 이상)
 - ➔ 단 1차 적발 시라도 사안이 중할 경우 전학 또는 퇴학을 명할 수 있다.
- ② 가벼운 신체접촉(손잡기, 팔짱 등)
 - ➔ 즉심, 벌점 부여 -3점
 - ➔ 지속적인 지도에도 변화의 여지가 없을 때에는 선도위원회에 회부한다.

③ 성관계

- ➔ 퇴학 및 전학

교외 -

- ① 혼숙(여관, 모텔)
 - ➔ 퇴학 처분

- ② 단체 혼숙(여관, 모텔)
 - ➔ 퇴학을 원칙으로 하나 사유에 따라 선도위원회에서 결정.
- ③ 찜질방(사우나) 출입
 - ➔ 1차 선도위원회 회부
 - ➔ 단 1차 적발 시라도 사안이 중할 경우 전학 또는 퇴학을 명할 수 있다
- ④ 찜질방(사우나) 단체 출입
 - ➔ 1차 선도위원회 회부
 - ➔ 단 1차 적발 시라도 사안이 중할 경우 전학 또는 퇴학을 명할 수 있다
 - ➔ 위 사유 이외의 기타 불건전한 이성교제는 선도위원회에서 처리한다.

위의 선도규정과 학칙에서 『불건전한 이성 교제로 풍기를 문란하게 한 학생』에 대한 처분을 어떻게 할 것인가? 더 나아가 미성년자인 학생의 임신은 건전한 이성교제의 결과로 보아야 할 것인가? 학생들의 생각과 교사의 생각과 학부모의 생각은 많은 차이가 있을 것이다. 우리 사회 일반의 규범적 가치관으로 청소년의 임신을 어떻게 받아 들여야 할 것인가?

4. 현실적인 대안은 무엇일까?

저출산 대책과 함께 미혼모 학생에 대한 퇴학을 하지 못하도록 행정적인 지시를 통해 학습권을 유지하고 있다. 미혼모 학생에 대한 보건복지가족부의 지원에서 월 10만원의 자녀양육비, 월 2만5천원의 의료비, 고등학교이하 중퇴자의 검정고시학습비, 월 5만원의 가구별 자산 형성 지원, 친자검사 지원비 등 다양한 지원 노력을 찾아 볼 수 있었다.

그러나 학업중단을 전제로 한 검정고시 바우처제도 대신, 미혼모 학생을 위한 전문적 보호와 교육이 이루어지는 대안학교의 설립을 제안하고 싶다. 학생들의 정서상 다니던 학교에서 친구들과 함께 생활하기를 원한다고 하지만, 색다른 눈으로 바라보는 여러 시선 속에서 미혼모학생이 산전의 긴 기간을 정서적 안정 속에서 보낸다는 것은 더욱 힘들 것 같은 생각이다.

학교는 어떤 노력을 보여야 할 것인가? 학교의 현실적인 여건에서는 가장 우선할 것은 여전히 인성교육을 통한 건전한 가치관의 함양, 임신 발생을 예방하기 위한 성교육이 될 것이다. 학습권 보호가 미혼모 학생을 임신 이전과 다름없이 반드시 그 학교 그 장소에 두어야 한다는 접근은 좀 더 숙고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청소년 미혼모 학생의 학습권을 강조하는 과정에서 학생 생활지도에 미치는 과급효과는 예상하기 힘들 정도일 것이다. 머리 길이 하나만으로도 학생 생활지도에 어려움을 겪는 학교의 현실에서 너무 일찍, 너무 무거운 과제를 안겨주는 것은 학교에 엄청난 혼란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

최선의 방안은 아니었지만 앞에서 언급한 우리교육청의 사례처럼 현행의 제도에서도 학습권을 제공할 ‘방송통신고등학교’, ‘대안교육위탁교육’, ‘직업위탁교육’ 등 여러 장치들이 있다. 학교 상담의 새로운 틀인 학생안전통합시스템인 Wee 프로젝트가 도입되면서 ‘Wee 클래스’, ‘Wee 센터’, ‘Wee 스쿨’과 유관기관과의 네트워크를 활용하면 공교육이 세밀하게 관심 갖지 못하는 소수학생에 대한 개별화된 관심을 훨씬 더 촘촘하게 보살피는 상담과 치유의 교육이 지원될 수 있을 것이다.

토론자로 참여하면서 ‘생활지도와 청소년 미혼모 학습권’에 대해 여러 생각들을 나누어 보았으나 속 시원한 답을 찾기 힘들다. 다만 근심만 커 가는 느낌이다.



청소년 미혼모는 학교가 알기 전에 떠난다

박 부 희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상담실장

먼저, 어떤 문제를 해결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에 대해 얘기하고 싶다. 그것이 문제가 발생하기 전에 미연에 예방하는 것일 것이다. 그러나 예방이 충분하지 않았을 수도 있고 또 예상치 못한 상황이 생겨서 불가피하게 문제가 발생했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해결을 위해 최선의 방법을 생각하고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라고 본다.

이런 관점으로 청소년 미혼모 문제를 바라본다면 발제에서 공통적으로 말하고 있듯이 청소년 임신을 예방하는 것이 최선의 방안일 것이다. 청소년 임신을 바라보는 사회적 편견이 심각한 우리 사회 현실을 감안해서 보았을 때 더욱 더 그러하다. 그것은 한상순님의 발제문에서 언급한 것처럼 임신한 당사자의 학업성취 및 자립에 심각한 장애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무엇보다도 청소년 자신을 위해서 예방되어야 함을 충분히, 다양한 방법으로 교육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아무리 예방 교육을 열심히 한다 해도 청소년 임신과 그로 인한 미혼모의 증가 추세는 막을 수 없는 상황이다. 비단 우리 사회뿐만 아니라 세계적인 추세이다. 통계에 따라 약간의 차이는 있지만 청소년 출산이 2008년 한 해만 해도 3,500건 정도에 이르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돌이킬 수 없는 엄연한 현실이 된 것이다.

청소년 미혼모가 증가하는 것은 한상순님과 서정애님의 발제문 중 ‘십대청소년의 성이 놓인 사회적 맥락’에서 말씀한 바와 같이 청소년 개인의 선택이라고 볼 수 없으며 사회 안전망이 완비되어 있지 않는 현실에서 가정 내 폭력과 빈곤한 경제 상황이 가출로 이어지고 가출이 또한 임신이라는 결과를 빚는 상황과 관계가 깊다. 즉, 청소년 개인의 윤리적 불감증으로 인해 발생되었다기보다는 사회 구조의 문제가 가정 문제로 이어지고 청소년들에게 응축되어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김은미님의 발제문 ‘재학 중 임신과 자퇴 강요 : 인권위 권고 사례’에서는 학교 당국과 교사들이 청소년 미혼모 문제를 어떻게 바라보는가를 극명하게 보여준다. 재학 중 임신한 학생을 학교에서는 어떻게 조치하는지가 말이다. 우선, 자퇴를 강요하는 것이다. 임신한 여학생에게 남자친구를 형사고발을 할 수도 있다는 말이 결정적으로 자퇴를 결심하게 만들었다. 더군다나 인권위와 피해자의 학습권을 보장할 수 있는 하나의 방편으로 재입학한 이후 위탁교육을 받는 대안을 마련하고자 노력하기로 의견을 모으고도 교직원 및 학교운영위원회, 학부모회 임원들을 대상으로 투표를 실시했고 절대다수가 반대했다는 이유를 들어 피해자의 학적을 회복할 수 없음을 통보했다고 되어 있다. 일련의 과정들을 볼 때, 학교 측의 태도는 일관된 것으로 보인다. 임신한 학생은 해당학교에서

내보내고 싶은 것이다. 인권위와 전문가의 설득에 대항할 명분이 없으니 학교 구성원들의 의견이라는 명분을 들어 인권위와의 합의조차 지키고 싶지 않다는 것이다. 그런데 여기서 주목하고 싶은 것은 이 진정사건이 학교 측이 제시한 생활규정 중 ‘불미스런 행동으로 학교의 명예를 훼손한 학생 또는 불건전한 이성교제로 풍기를 문란하게 한 학생’이라고 해당된다는 말과 다른 학생들의 학습권도 보호해야 하기 때문에 해당 학교에 다닐 수 없다고 말한 대목이다. 하지만 두 가지 문제 모두 사실을 어떻게 바라보느냐의 관점과 인식의 문제이지 실증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라고 본다. 또 설사, 만에 하나 그것이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학생이 교육받을 권리가 박탈되어 이후 사회참여가 상당히 힘들어지고 그 결과로 인해 자립적인 성인이 될 수 없으며 이는 다시 장기적인 빈곤상태가 될 수도 있고 재임신의 위험도 더 많아질 것이 뻔한데 과연 어떤 것이 더 위험한 결정일까?

김은미님의 발제문 중, 별지 2 ‘청소년 미혼모 학습권 보장 외국 사례’는 우리 사회가 청소년 미혼모 문제를 어떻게 다루어야 하는지에 대해 시사한 바가 크다. 미국, 유럽 등 소위 자유로운 성문화를 지닌 나라에서만 학교 내 미혼모 특별학급, 탁아시설을 운영하는 등의 적극적인 교육권 보장 정책을 펴는 줄 알았는데 우리와 같은 동양문화권이며 인근나라인 대만에서조차 교내 외 시설 구비 및 교육과정을 이수할 수 있도록 절차를 마련할 것을 법으로 제정한 것이 신선한 자극으로 다가온다. 특히 교육부 학생국장의 인식이 놀랍다. 임신을 했다는 이유만으로 불량학생이나 나쁜 사람으로 낙인찍어서는 안 되며 이는 학생에 대한 인격적인 차별이라고 말한 부분은 우리 사회의 인식수준과 크게 비교된다.

청소년 미혼모에 대한 교육권 보장이 사회적 편견으로 인해 되지 못하는 상황이라는 것을 부인하기 어렵지만 현행 법률안에서라도 보장될 수 있는 근거는 있다. 「헌법」, 「교육기본법」, 「초·중등교육법」의 틀 안에서라도 이행할 수 있기 때문이다. 위 법률 등에서는 성별, 종교, 신념, 사회적 신분 신체적 조건 등을 이유로 교육에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유엔아동권리협약」에서는 사회의 유능한 성원이 될 동등한 기회를 아동에게 제공해야 한다고 선언하고 있다. 따라서 위 법률과 협약을 성실히 이행하는 차원에서라도 학습권을 보장하는 지원체계와 시스템을 만들어야 한다.

또한 청소년 미혼모의 차별받지 않은 교육권은 그들의 다양한 욕구를 반영한 형태가 되어야 한다는 홍순혜님의 발제에 전적으로 동의한다. 발제에서 청소년 미혼모들은 유사한 욕구를 가진 단일 집단이 아니라는 견해를 밝혔다. 원격학교에 계속 다니거나 원격

학교의 위탁교육을 바람직한 학업지속 방법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청소년도 있는 반면, 정규교육 이외의 기술교육이나 검정고시, 대안학교 진학을 희망하는 이들도 있다. 따라서 청소년 미혼모들이 희망하고 선호하는 형태를 미리 규정하여 강제하지 말고 그들의 요구를 충실히 반영한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좋겠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교육 기관은 차별 없이 능력과 적성에 따라 교육을 받을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는 데 역점을 두어야 한다. 발제자들이 제시한 여러 방안 중에서 홍순혜님이 제시한 대안학교나 임신 및 산후 조리 기간에도 교육을 지속할 수 있는 위탁교육의 활성화 방안이 현실적인 거리는 생각이 든다. 서구 여러 나라의 경우처럼 청소년 미혼모들이 재학하고 있는 학교 안에서 다양한 지원을 제공하는 것은 현재 우리 사회의 인식 차원에서 볼 때 시간이 요하는 장기적인 과제로 보여지기 때문이다. 하지만 원격학교에서 학업을 지속하고 싶은 학생이 있다면 이 또한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앞에서 말했듯이 그들의 욕구는 다양할 것이고 그 욕구를 충실히 반영한 형태이길 바란다.

앞에서도 언급했지만 청소년 미혼모 증가는 이제 돌이킬 수 없는 추세이다. 하지만 사회적 편견은 없어지지 않고 있다. 이는 학교나 가정에서 이들을 보호하고 있는 교사, 학부모뿐만 아니라 미혼모 자신도 청소년 임신에 대한 거부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는 상황이라고 본다. 서정애님의 발제에서 십대여성의 임신을 문제적으로 보는 인식에서 벗어나 임신으로 인해 경험하게 되는 다양한 장애들을 어떻게 극복하게 할 것이라는 관점으로 전환하기 시작해야 한다는 의견은 근본적인 문제해결을 위한 반드시 유념해야 할 대목이라고 본다. 십대라는 나이와 가난하다는 이유가 십대들이 성적 권리를 확보하는 과정에서 ‘장애요인’이 아니라 사회적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차이’로써 고려되어야 한다는 의견은 청소년 미혼모 문제를 바라보는 인식의 전환이 근본적 해결에 다가설 수 있는 주춧돌이라는 측면으로 볼 때, 반드시 곰곰이 생각보아야 한다. 즉, 사회적 편견을 해소하기 위해서 뿐만 아니라 청소년 미혼모 스스로가 이후 건강하고 자립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기 위해서는 더욱 더 인식의 전환이 필수적이라는 생각에서이다.

청소년 미혼모를 학습권이 보장되지 않았을 때, 징계나 처벌 차원에서 자퇴 중용, 퇴학, 전학 등으로 이들의 교육받을 권리가 보장되지 않았을 때 결과는 매우 부정적이라는 것이 여러 발제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이런 상황에서 학업을 지속하려면 낙태를 선택할 수밖에 없다. 이들에 대한 적절한 보호와 교육, 지원이 없이 학교 밖으로 내몰기만 한다면 재임신으로 이어질 가능성만 높인다고 본다. 우리 사회처럼 학력을 중요시 하는 사회에서 학업중단은 총 없이 전쟁터에 군사를 내보내는 의미와 같다. 게다가 이렇게 실업문

제가 심각한 상황에서는 이들이 소위 변변한 직장에 취업하기란 아예 불가능하다. 부모나 가족의 경제적 지원이 없다면(없을 가능성이 매우 높지 않은가!) 빈곤한 처지를 벗어날 수 없을 것이고 그들이 출산한 아동 또한 궁핍한 생활을 벗어나기 힘들 것이다.

국가인권위 진정사건에서 학교 측은 학생의 본분은 학업에 전념해야 하는 것이므로 부모님의 교제 허락 유무와 관계없이 학생이 임신을 하였다는 사실만으로도 불미스러운 행동 혹은 풍기 문란 행동으로 판단된다고 하였는데 솔직히 말해서 어찌되었든 한 생명을 소중히 생각하고 양육할 부모의 책임을 다하며 학업에 전념하겠다는 것과 낙태 중에서 어떤 것이 더 불미스럽고 풍기문란한 것인지 묻고 싶다.

여러 정황과 발제자들의 의견을 종합해 볼 때 청소년 미혼모의 교육권을 박탈하는 것은 문제해결에 전혀 도움이 안 된다는 결론을 얻을 수 있다. 일벌백계의 차원에서 다른 학생들이 임신하지 않겠다는 결심을 하고 그렇게 행동할 것이라는 의도에서 나온 조치였다면 그건 잘못 계획된 것임을 그간의 사례와 증가 추세가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지 않은가? 학교 밖으로 청소년 미혼모를 내몬다면 다른 학생들의 임신을 예방하는 효과보다는 학교에 임신 사실이 알려지기 전에 알아서 학교를 떠나는 상황만 만들 뿐이라고 본다.

국가인권위의 진정사건은 전문가와 인권위의 노력으로 원적회복 후에 대학입 시도 치렀다고 한다. 그것은 적극적인 가족의 지지가 뒷받침된, 어찌면 청소년 미혼모 문제에 있어서는 특수한 예일 것이다. 모든 청소년 미혼모들에게 그들이 학습받을 다양한 지원 시스템이 마련되지 않는다면 이런 예외적인 청소년 이외의 일반적인 미혼모는 계속해서 방치될 수밖에 없다. 따라서 일상적이고 지속적인 학습권이 실현될 수 있는 제도 마련이 시급하다. 그 제도는 획일적이고 다양한 방안을 마련하고 그 틀 안에 들어오라고 하기 보다는 다양한 욕구를 포용하여 그들이 원하는 방안이 실현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강조하고 싶은 것은 미숙하고 어리다고 더 이상 아이들을 함부로 대하지 말자는 것이다. 미숙하고 어릴수록 더 섬세하고 다양한 사회 지원이 마련되어야 하지 않은가? 또 하나, 다수의 학생들을 보호한다는 핑계를 대며 어른들의 불편함을 숨기지 말자는 것이다. 사실은 다수의 학생들을 보호한다는 방패 뒤에 청소년들의 임신 또는 혼전 임신을 불온시 하는 어른들의 관념을 보호하고 싶은 것은 아닌지 곰곰이 생각해 보았으면 한다.

같이 공부하고 즐겁게 뛰놀고, 함께 고민했던 친구가 원하던, 원하지 않던 임신을 하게 되었을 때 어른인 우리들보다 더 심각하게 불쾌하고 심지어 공부도 하지 않고, 혹은 모방 임신까지 하게 될까? 낙태를 하지 않으면 학교를 계속 다닐 수 없는 상황, 곤란한 상황에 처한 아이를 도와주는커녕 자신의 책임영역 밖으로 내몰려고만 하는 어른들을 보고 자란 아이들이 과연 이 사회를, 우리 어른들을 세상을 함께 살아갈 동반자로 생각할 수 있을까? 난 이런 상황이 더 무섭고 끔찍하다. 아이들이 통째로 이 사회와 어른들을 불신하고 어려움에 처한 동료는 무시하고 배제해도 된다고 배울 것 같아, 그것이 정말 두렵고 무섭다.



토 론 6



학생 미혼모 학습 지원 방안

안 명 수
교육과학기술부 학교운영지원과장

I. 학생 미혼모 실태

- 저출산·고령화사회에 즈음하여 지속 가능한 사회를 위한 인적자원 개발이 강화되고 있는 가운데 미혼모, 미혼부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증대되고 있으나, 미혼모 시설에 입소한 미혼모 중 학생연령층에 있는 사람들이 1/3이상인데 반해 이들에 대한 적절한 관리방안과 별도의 대책이 없는 실정이다.
- 교과부에서는 학생미혼모의 실태를 파악하고 학생미혼모의 사회적 참여를 지원하는 대안 교육프로그램 및 생태적 교육복정책을 탐색하기 위하여 「학생 미혼모 실태조사 연구('08, 제석봉 외, 대구가톨릭대)」를 실시하였다.
 - ※ 학생미혼모(unmarried student-mothers) : 법적으로 미혼의 상태에서 임신 중이거나 출산을 한 13세 이상 18세 이하의 학생
- 학생미혼모 실태조사결과
 - ※ 조사대상 : 미혼모보호시설(35개소)의 학생미혼모 73명
 - 학생미혼모의 평균연령은 16.77세(고1 재학 연령대)이며, 18세가 전체의 41.1%를 차지하였고, 17세가 23.3%, 16세가 19.2%, 15세가 5.5%, 14세가 9.6%이며, 13세도 1명(1.4%)으로써 학생미혼모의 연령이 십대 초반에서 후반으로 갈수록, 중학교에서 고등학교로 학년이 올라갈수록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 학생미혼모의 교육정도는 전문계 고등학교 중퇴가 34.2%(25명)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중학교 중퇴가 17.8%(13명), 인문계 고등학교 중퇴가 13.7%(10명) 순으로 나타남. 학생미혼모의 총 84.9%가 학업이 중단된 상태이다.
 - 학생미혼모의 발생이 지역을 가리지 않고 발생하고 있으며, 일부 학생미혼모의 경우(13.7%), 폭력서클 가입에 따른 일탈과 지위비행(status offence)이 학생시기의 임신이라는 위기상황과 어느 정도 관계가 있음을 추론할 수 있다.
 - 임신한 학생이 학교에 임신사실을 알리지 않은 경우가 알린 경우보다 약 7 : 3의 비율로 높다.
 - 임신 후 애로사항 가운데 높은 비율을 보인 것은 임신에 대한 부정적인 사회 인식과 위기상담의 필요성, 학업중단에 대한 두려움을 꼽고 있다.

II. 청소년 미혼모 학습 지원 필요성

- 청소년 임신은 권장할 일은 아니지만, 임신으로 인해 학생의 학업을 중단할 경우 일생을 통해 실업상태나 잠재적인 실업에 놓일 가능성이 높아 빈곤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
- 학생미혼모의 임신은 학생의 신체적, 사회적, 교육적 및 직업적 발달을 크게 바꿔게 한다. 특히, 교육적 측면에서 십대들이 임신을 하게 되면 거의 대부분 학업을 중단하며, 이러한 학업 중단은 일생을 통하여 실업사태나 잠재적 실업에 놓일 가능성을 높인다.(김정휘, 2001)
 - 즉, 십대의 조기 임신은 학업중단→역량개발 기회박탈→무직이나 실업→빈곤의 악순환에 빠져들고, 자녀교육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또, 학생미혼모는 어린 나이에 거의 모든 사회적 관계가 단절된 상황에서 임신과 출산의 모든 과정을 혼자서 감당해야 하므로 마음의 혼란, 경제적인 문제, 가족과의 관계 등 여러 가지 측면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여성가족부, 2005)
 - 따라서, 학생미혼모들이 자신의 역량을 강화하고 학습권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정책이 필요하다.
- 실태조사결과 조사 대상 학생미혼모(73명) 중 58.8%(43명)가 학업을 계속할 의사를 보이는 등 학업에 대한 의지가 높고,
 - 학업을 계속하고 싶은 이유로는 ‘최소한 고등학교는 졸업해야 사회적으로 무시당하지 않으므로’가 가장 높았으며, ‘더 나은 미래를 준비하기 위해’, ‘실패한 인생으로 끝나고 싶지 않아서’, ‘더 나은 직장을 얻기 위해’, ‘대학에 진학하기 위해’ 순으로 조사됨. 이는 학업을 계속 하는 것이 미래의 사회·경제적 지위 안정에 중요하게 기능함을 대부분의 학생미혼모가 인식함을 반영하고 있다.
- 학생미혼모의 학업을 계속하고자 하는 의사에 반하여 현실적으로 어려움에 부딪히는 제약조건으로 ‘복학 및 전학의 어려움’과 ‘학업중단으로 인한 공부에 자신감 부족’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 학생미혼모를 위하여 학교에서 어떤 조치를 취해주기를 희망하는 가에 대한 조사에서는 가장 높은 비율로 ‘임신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병가 형식을 통해 출석을 인정’해 주거나, ‘휴학’을 인정해 줌으로써 학업이 중단되지 않기를 강력하게 희망하

고 있다.

- 학생미혼모 입장에서 학업을 계속하기 위하여 ‘미혼모시설’에 교사를 파견하여 교육을 받고, 학력을 인정해 줄 수 있게 제도적 뒷받침을 해 주기를 희망하고 있다.
- 학생미혼모를 위한 정부의 지원에서는 ‘학업수행 및 아기 양육을 위한 경제적 지원책’을 1순위로 꼽았으며, 그 다음으로는 ‘학업을 계속할 수 있는 대책’과 ‘미혼모에 대한 사회적 편견 해소’ 순으로 나타났다.

Ⅲ. 청소년 미혼모 학습 지원 방안

1. 청소년 임신 예방 교육 강화

-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학생미혼모의 임신시 학업상태가 ‘재학중’인 경우(42.5%)보다 ‘학업을 중단한’ 상태(56.2%)에서의 임신 비율이 더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 따라서, 학생의 학업중단이 일어나지 않도록 노력하는 것이 학생미혼모의 발생을 예방하는 주요한 접근이다.
 - 이를 위하여 성문화센터, 외부 전문강사 등을 활용하여 학교 성교육 및 성폭력 예방교육을 강화하고 있고,
 - 학교 성교육 전담교사를 지정하고, 연간 10시간 이상 성교육 및 성폭력 예방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고 있다.
 - 또한, 십대들의 이성교제가 더욱 개방적이며 애정 표현이 사회통념보다 조숙하기 때문에 건전한 이성교제의 학교분위기를 조성한다.
- 또한, 교육과학기술부에서는 학교 성교육 및 성폭력예방교육을 위한 각종 프로그램과 자료를 개발·보급하고 있으며, 이를 지속적으로 수정·보완해 나갈 계획이다. 특히 개발된 자료가 시의적절한지, 학생들의 발달단계에 맞는지, 자료의 효과성 등에 대하여 검토하여 수정·보완할 예정이다.

2. 청소년 미혼모 학습 지원

- 임신 및 출산한 학생이 학업을 계속할 수 있도록 양육과 보육이 가능한 학생미혼모를 위한 대안학교 설치, 학생·교사 대상의 ‘임신한 학생 미혼모에 대한 부정적 인식 개선 교육’, 출산 전·후 학업을 계속할 수 있도록 전문가 상담 지원 등 가능한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 ‘재학 중 임신한 학생미혼모’에 대해서는 학생이 임신을 했다는 이유만으로 교육권에 대한 불이익을 받는 징계 대신 학업을 지속하게 지원할 수 있도록 학교 규칙의 제·개정하도록 시·도교육청에 시달하였다.
 - 특히, “임신”을 이유로 학교가 자퇴나 전학 등의 방법으로 학생을 징계하지 않도록 관련 규정 제·개정하도록 조치하였다.
- ‘학업을 중단한 후 임신한 학생미혼모’는 대안교육을 통하여 학업을 계속할 수 있도록 Wee 스킴, 대안학교, 대안교육위탁기관 등을 이용한 대안교육의 기회를 다양하게 제공하여 해당학생이나 학부모가 일반학교에 재학하거나 대안학교에 다니는 것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 학생미혼모가 가족내에서 가장 절실하게 바라는 것은 ‘부모의 이해와 용서’이듯이 학생미혼모 발생부터 부모의 지지를 이끌어 내는 부모상담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IV. 맺음말

- 학생미혼모를 비난하기보다는 인권차원에서 존중받는 사회적 약자로 배려하는 사회적 인식이 필요하다.
- 학생미혼모의 학습지원과 병행하여 학생미혼모의 사회 부적합감과 열등감을 극복하기 위하여 학생미혼모를 위한 자아존중감 증진 프로그램 제공, 미혼모의 자립을 돕기 위한 미혼모의 능력에 맞는 맞춤형 자립지원과 취업 지원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학생미혼모가 성공적으로 학업을 계속하여 대학에 진학하거나 취업 등 긍정적인 사례를 발굴·홍보하는 등 사회적인 관심과 지원이 필요하다.

청소년 미혼모 학습권 보장 관련 공개토론회

| 인 쇄 | 2010년 3월

| 발 행 | 2010년 3월

| 발행인 | 현 병 철

| 발행처 | 국가인권위원회 차별조사과

| 주 소 | (100-842) 서울특별시 중구 무교동길 41
금세기B/D (을지로1가 16번지)

| 전 화 | (02) 2125-9861 | F A X | (02) 2125-9928

| Homepage | www.humanrights.go.kr

| 인쇄처 | 도서출판 한학문화

| 전 화 | (02) 313-7593 | F A X | (02) 393-3016

〈비매품〉

사전승인 없이 본 내용의 무단복제를 금함.